

◆ 본 사례집은 특별사법경찰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특별사법경찰 제도의 기본이해, 수사기법, 수사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정리한 자료임.

◆ 본 사례집의 수사실무에 관한 사항은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을 포함한 기타 관련 법령 및 「부산광역시 특별사법경찰 인권보호수사 지침」을 근거로 하고 있음.





특별사법경찰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수사활동 사례집

01 특별사법경찰제도 및 수사실무

제1절 특별사법경찰제도	9
① 특별사법경찰제도 개요	12
②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및 권한과 책임	16
③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 흐름도	17
제2절 특별사법경찰 수사실무	19
① 수사 일반	20
② 수사의 개시	26
1. 내사	26
2. 수사 개시	30
③ 수사의 실행	31
1. 수사의 방법	31
2. 행정조사와 차이	33
3.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35
4. 임의수사	35
5. 체포와 구속(대인적 강제수사)	50
6. 압수, 수색, 검증(대물적 강제수사)	65
7. 금융거래 추적수사	76
8.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수사	79
9. 수사결과 보고	85
④ 수사의 종결	86
1. 사건송치 절차	86
2. 송치서류	87
3. 수사결과통지의 통지	88

제3절 각종 수사서류 작성요령	89
① 사건송치서	90
② 압수물 총목록	94
③ 기록목록	95
④ 의견서	97
⑤ 범죄인지서	107
⑥ 피의자신문조서	110
⑦ 출석요구서 등과 출석요구통지부	118
⑧ 체포영장신청서	122
⑨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서와 압수조서	126
⑩ 금융거래 추적수사	129
⑪ 수사결과보고서	136
⑫ 기타서류	137

02 부산시 특별사법경찰 현황	139
제1절 전담조직 및 인력	141
① 특별사법경찰과 조직·인력 및 지명직무	142
② 시 관련부서, 구·군 인력 및 지명직무	143
제2절 전담조직 설치근거 및 추진경과	147
① 설치근거	148
② 추진경과	148

03

2020년 주요성과

1. 2020년 수사 및 홍보 현황

① 분야별 · 기관별 수사실적

② 위반유형별 처분내용

③ 주요 홍보 실적

2. 분야별 주요 수사사례

■ 사회복지분야

【수사요령 및 관련법령】

1. 사회복지법인 무허가 기본재산 처분 적발

■ 환경분야

【수사요령 및 관련법령】

1.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위법행위 적발

2. 공장밀집지역 환경관리 취약업체 적발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위법행위 적발

4. 대형 대기, 폐수 배출업체 환경관리 위법행위 적발

■ 식품분야

【수사요령 및 관련법령】

1. 보따리상 통해 수입한 불법 중 농산물 유통업체 무더기 적발

2. '세균수 기준치 최대92배 초과' ... 커피제조 업체 등 적발

■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분야

【수사요령 및 관련법령】

1. 요양병원 내 집단급식소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불법행위 적발

2. 유명산지 과일 표시 등 원산지 거짓 표시 판매행위 적발

■ 공중위생분야

【수사요령 및 관련법령】

1. 행락철 주요관광지 주변 불법 숙박업소 특별수사

■ 의·약분야

【수사요령 및 관련법령】

1.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제조·판매업체 기획 수사 적발

2. 오픈마켓 등을 통한 화장품 불법 유통·판매 업체 수사 적발

151

153

154

161

164

165

165

173

209

227

243

251

04	관계법령	269
	1. 형사소송법(발췌)	270
	2. 형사소송규칙(발췌)	298
	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308
	4.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325
	5. 부산광역시 특별사법경찰 인권보호수사지침	365
	6.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388
	7.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발췌)	390
	8. 통신비밀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발췌)	398
	9.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	414
	10. 체포·구속 업무처리지침	419

01

특별사법경찰제도 및 수사실무

- 01 _ 특별사법경찰제도
- 02 _ 특별사법경찰 수사실무
- 03 _ 각종 수사서류 작성요령

특별사법경찰제도 및 수사실무

01

특별사법경찰제도

01. 특별사법경찰제도

① 특별사법경찰제도 개요

1. 의 의

- 사회발전으로 범죄 수사의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사회복지, 식품, 환경, 청소년, 공중위생, 의약, 원산지표시 등 특별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하는 제도
-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함), 「형사소송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이하 '수사준칙'이라 함)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업무를 수행함.
※수사과정의 인권보호 강화 및 수사업무의 내부적 통제 강화를 위해 「부산광역시 특별사법경찰 인권보호수사지침」(이하 '지침'이라 함) 제정(예규, 2021.8.11.)
-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법 제245조의10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함)에 의하여 정해지고, 동 법률에 규정된 직무범위에 한하여 수사권이 인정되며 그 직무를 넘는 범죄는 (일반)사법경찰관리에 이첩

2. 특별사법경찰의 법적 근거

- 법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그 밖에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 및 제6조

-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지방공무원은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지방공무원은 특별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제5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규정(제6조)

3. 사법경찰권 부여방식별 구분

가. 법률이 직접 사법경찰권을 부여한 특별사법경찰관리¹⁾

-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그 지소의 장
- 소년원 또는 그 분원의 장이나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의 장
- 보호감호소·치료감호시설 또는 그 지소의 장
- 교정시설 순회점검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 출입국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 보호관찰소 또는 그 지소의 장
- 근로감독관, 선원근로감독관, 20톤 이상 해선의 선장 및 선장의 지명을 받은 사무장 등, 항공기의 기장 및 기장의 지명을 받은 승무원 등
- 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의 지명을 받은 직원
- 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에서 산림 보호를 위한 단속 사무를 전담하는 임업주사(6급)부터 임업서기보(9급)까지의 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등

나.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특별사법경찰관리²⁾

- 교도소, 지방교정청, 소년원, 보호·치료감호소, 보호관찰소, 산림보호, 식품,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등대, 철도, 소방, 문화재보호, 계량검사, 공원관리, 관세, 어업감독, 광산안전, 국가보훈, 공중위생, 감염병, 환경, 무선·전기통신, 차량운행, 도로시설관리, 관광지도, 저작권침해, 청소년보호, 원산지표시(농축수산, 대외무역), 외화획득용 원자재

1) 사법경찰직무법 제3조, 제4조, 제6조의2제1항 및 제3항, 제7조, 제8조, 제10조

2)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

수입 등, 농약·비료, 하천감시, 개발제한구역, 가축·식물·수산생물 방역·검역, 자동차운행, 지방노동청 근로감독(8·9급), 군용물·군사기밀(군사법경찰관리), 병무, 해양환경, 부정경쟁, 상표·전용사용권,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 도시공원관리, 품종·종자, 동물보호, 긴급안전점검, 석유·석유대체연료, 대부·대부중개, 방문·다단계 등, 선불식할부거래, 불공정거래, 원자력안전 업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 특별사법경찰관 : 7급 이상, 특별사법경찰리 : 8~9급

4.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³⁾

지명분야	수사대상	지명대상
산림보호	산림, 그 임산물과 수렵에 관한 범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상 범죄	직무 관련 지방공무원
식품	「식품위생법」·「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상 범죄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식품위생에 관한 범죄	직무 관련 지방공무원
의약	「약사법」·「화장품법」·「의료기기법」·「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상 범죄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약사 관련 범죄	직무 관련 지방공무원
문화재 보호	「문화재보호법」·「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상 범죄 및 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 내 「경범죄처벌법」 상 범죄의 현행법	직무 관련 지방공무원
계량검사	「계량에 관한 법률」 상 범죄	계량검사공무원
자연공원	「자연공원법」 상 범죄 및 공원구역의 경범죄 현행법	직무 관련 지방공무원
어업감독	「수산업법」·「양식산업발전법」·「어업자원보호법」·「수산자원관리법」·「어선법」 및 「내수면어업법」 상 범죄	어업감독공무원
공중위생	「공중위생관리법」 상 범죄	직무 관련 지방공무원
의료	「의료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상 범죄	직무 관련 지방공무원
사회복지	「사회복지사업법」 상 범죄	직무 관련 지방공무원
감염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범죄	방역관, 역학조사관
환경	「대기환경보전법」 등 39개 환경관련법률상 범죄	직무 관련 지방공무원
도로관리	「도로법」 상 범죄	직무 관련 지방공무원

3)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 및 제6조

지명분야	수사대상	지명대상
관광지도	「관광진흥법」 상 범죄	직무 관련 지방공무원
저작권	「저작권법」 상 저작권 침해 범죄	직무 관련 지방공무원
청소년보호	「청소년보호법」 상 범죄	직무 관련 지방공무원
농축산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등 6개 농축산물 관련 법률 상 범죄	직무 관련 지방공무원
대외무역 원산지	「대외무역법」 중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범죄	직무 관련 지방공무원
대외무역 승인	「대외무역법」 중 외화 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 및 사용목적 변경승인 관련 범죄	직무 관련 지방공무원
농약·비료	「농약관리법」 및 「비료관리법」 상 범죄	직무 관련 지방공무원
하천관리	「하천법」 상 범죄	직무 관련 지방공무원
개발제한구역 단속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 범죄	직무 관련 지방공무원
동·식물 검역	「가축전염병 예방법」·「식물방역법」 상 범죄	가축·동물방역관 식물검역관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상 무등록 자동차정비업, 이전등록미신청, 무단방치 범죄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상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범죄	직무 관련 지방공무원
해양환경 관리	「해양환경관리법」 등 관련 9개 법률상 범죄	직무 관련 지방공무원
상표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 부정경쟁행위 범죄 및 「상표법」 상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 범죄	직무 관련 지방공무원
운수사업단속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범죄	직무 관련 지방공무원
도시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상 무단점용·훼손 등	직무 관련 지방공무원
식품품종	「종자사업법」 및 「식품신품종 보호법」 상 범죄	직무 관련 지방공무원
동물보호	「동물보호법」 상 범죄	동물보호감시원
재난안전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범죄	직무 관련 지방공무원
석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상 범죄	직무 관련 지방공무원
대부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 범죄	직무 관련 지방공무원
방문판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상 범죄	직무 관련 지방공무원
할부거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상 범죄	직무 관련 지방공무원
수산생물질병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상 범죄	수산생물방역관
시설물 안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긴급안전 점검 관련 범죄	직무 관련 지방공무원
부동산	「공인중개사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상 범죄 및 「주택법」 상 공급질서교란 범죄	직무 관련 지방공무원

②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및 권한과 책임

1. 직무

- 특별사법경찰관은 소속 관서의 관할구역 및 법에 의한 직무범위 안에서 범인의 검거 및 조사, 증거 수집 등을 직무로 하고, 특별사법경찰리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보조함을 직무로 함.
- 특별사법경찰관리도 사법경찰관리인 점에서 형사소송법상의 권한에 있어서 일반사법경찰관리와 차이가 없으나 직무범위가 특수한 사항이나 특정지역으로 제한되어 있음.

2. 검사의 수사지휘

-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범죄를 수사하는 업무수행에 있어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함.

3. 업무처리 절차



4. 권한과 책임

-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의 주체로서 실제적 진실발견을 위해 적극적 · 능동적으로 범죄를 수사
-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며 수사권을 신중히 행사함.

③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 흐름도

1.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대상

-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 제6조의2제2항, 제7조의2, 제7조의3, 제9조에 규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⁴⁾

<p>1</p> <p>지명제청서 제출 (관서장 → 검사장 또는 지청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명(갱신) 제청서, 인사기록요약서 등 	<p>2</p> <p>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서 작성 (범죄경력조회, 적격 여부 판단)
<p>3</p> <p>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심의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 부장검사 • 위 원 : 2명(검사 및 5급이상 검찰공무원) • 간 사 : 1명(검찰청 소속 공무원) 	<p>4</p> <p>특별사법경찰 지명 통보 (검사장 또는 지청장 → 관서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관서의 장에게 지명결과 통보 및 지명서 배부

※지명기간: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받아 그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
 ※지명철회:제5조의2(심의기준)제1항 각호에 해당하거나 퇴직한 때 또는 보직 변경 등

4)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예규)

특별사법경찰제도 및 수사실무

02

특별사법경찰
수사실무

02. 특별사법경찰 수사실무

① 수사 일반

1. 수사의 의의

- 수사라 함은 범죄의 단서가 있을 때 범인이 누구이며, 범죄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조사하는 한편 범인과 증거를 찾아내어 보전하는 수사기관 활동을 말함.
- 수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을 받게 하고 확정재판에 따라 그 형을 집행하는 데 있음.

가. 수사의 기본이념

(1) 실체적 진실 발견

- 범죄수사의 1차적 목표는 범죄의 진상을 파악하고 진범이 누구인가를 밝혀내는 것임. 이것을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 함.
- 그러나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는 한계가 있음. 수많은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하나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무한의 시간과 비용을 소비할 수 없으며, 또 이미 발생하였던 범죄를 일정한 시간이 경과 한 후 완전무결하게 입증할 수는 없음. 또한 사회의 다른 이익과 충돌되는 경우에는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음. 따라서 수사가 추구하는 실체적 진실은 '보통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진실하다고 믿는 정도' 를 말함.

(2) 기본적 인권의 보장

- 범죄수사를 지배하는 또 하나의 기본적 이념은 기본적 인권의 보장, 증거를 수집하고 범인의 신병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는 부득이하게 신체의 자유 등 국민의 여러 가지 기본권이 제약되기도 함.
- 이에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형사소송절차나 수사 절차상 인권유린이 없도록 국민의 여러 가지 기본권을 보장하는 한편 임의수사의 원칙을 선언하면서 강제처분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극히 예외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나. 수사의 기본원칙

(1) 임의수사의 원칙

- 수사의 방법은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되, 강제수사는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 이를 임의수사의 원칙이라 함.
- 형사피고인 무죄추정의 법리 또는 필요최소한도의 법리를 제도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음.

(2) 수사비례의 원칙

- 수사결과에 따른 이익과 수사로 인한 법익침해가 부당하게 균형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서 강제수사와 임의수사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수사의 기본원칙임.
- 수사권의 행사, 특히 수사기관이 강제처분을 위한 실행행사를 하는 경우에 강조되나 수사권의 발동에 관해서도 적용됨.

(3) 수사비공개 원칙

- 수사의 개시와 실행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서 수사밀행의 원칙이라고도 함. 이와 반대로 공판절차는 공개가 원칙임.
- 수사내용을 사전에 공개한다면 범인의 발견·검거 또는 증거의 발견·수집·보전, 관계자의 개인적 비밀·사생활·명예 등 인권보호, 피의자 검거 및 증거확보에 대한 지장의 방지 등을 위하여 요청됨.

(4) 영장주의

- 강제수사에 관한 영장주의는 헌법상의 원칙으로서 수사기관이 강제수사를 할 경우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임.

-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므로 엄격한 요건 하에 예외가 인정됨.

(5) 자기부죄금지의 원칙

- 헌법에 자기부죄의 특권을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의 묵비권 및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음.
- 「헌법」 제12조제2항의 고문 및 불리한 진술 강요 금지, 「형법」 제125조의 인신구속 직무 수행자의 피의자 등에 대한 폭행·가혹행위 처벌 등은 이 원칙의 제도적 표현이라 할 수 있음.

헌법제12조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형법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게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6) 강제수사 법정주의

- 「헌법」 제12조제1항에 강제처분에 대한 법률적 규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헌법상의 강제처분 법정주의를 수사절차에서는 ‘강제수사 법정주의’ 라고 함. ‘임의수사의 원칙’ 과 표리관계에 있음.

헌법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은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허용되는데, 강제수사의 종류, 요건과 절차에 대해서도 엄격한 법률적 규제를 받음.

(7) 제출인 환부의 원칙

- 수사기관이 압수물을 환부함에 있어서는 피압수자(제출인)에게 환부함을 원칙으로 함.
- 국가형벌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절차에서는 사인 간의 실체법상 권리관계에 관여하지 아니함이 원칙이므로 제출인 환부의 원칙이 요구되며, 예외적으로 압수물이 장물인 경우에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피해자 환부를 허용함.

다. 수사기관

(1) 수사기관의 의의

- 수사기관이라 함은 법률상 범죄의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되어 있는 국가기관을 말함.
- 법 제196조 및 제197조제1항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수사기관으로 인정하고 있음.
-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함.

법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법 제196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법 제197조(사법경찰관리) ①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②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2) 검사

- 검사는 공소권 및 재판집행권을 가지고 있으며, 특정한 범죄에 대하여 직접 수사개시를 할 수 있음.
- 형사소송법 개정('21.1.1.시행)으로 일반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폐지되었으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권은 존치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 나.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 다. 가목·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2.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3.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4. 재판 집행 지휘·감독
5.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6.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3) 사법경찰관리

(가) 일반사법경찰관리

- 법 제197조에서 열거되어있는 사법경찰관리가 일반사법경찰관리임. 경무관·총경·경정·경감·경위는 사법경찰관이고, 경사·경장·순경은 사법경찰리임.
- 일반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며⁵⁾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음.
-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및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음.⁶⁾
-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사건 불송치가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음.⁷⁾

(나) 특별사법경찰관리

- 전문적 지식이 정통한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수사활동을 하도록 제도화한 것이며, 그 직무담당자와 직무범위는 사법경찰직무법과 각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음.
- 특별사법경찰관리도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이나, 직무범위가 특수한 사항이나 지역에 제한되어 있으며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함.⁸⁾

법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 ① 심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그 밖에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할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
- ④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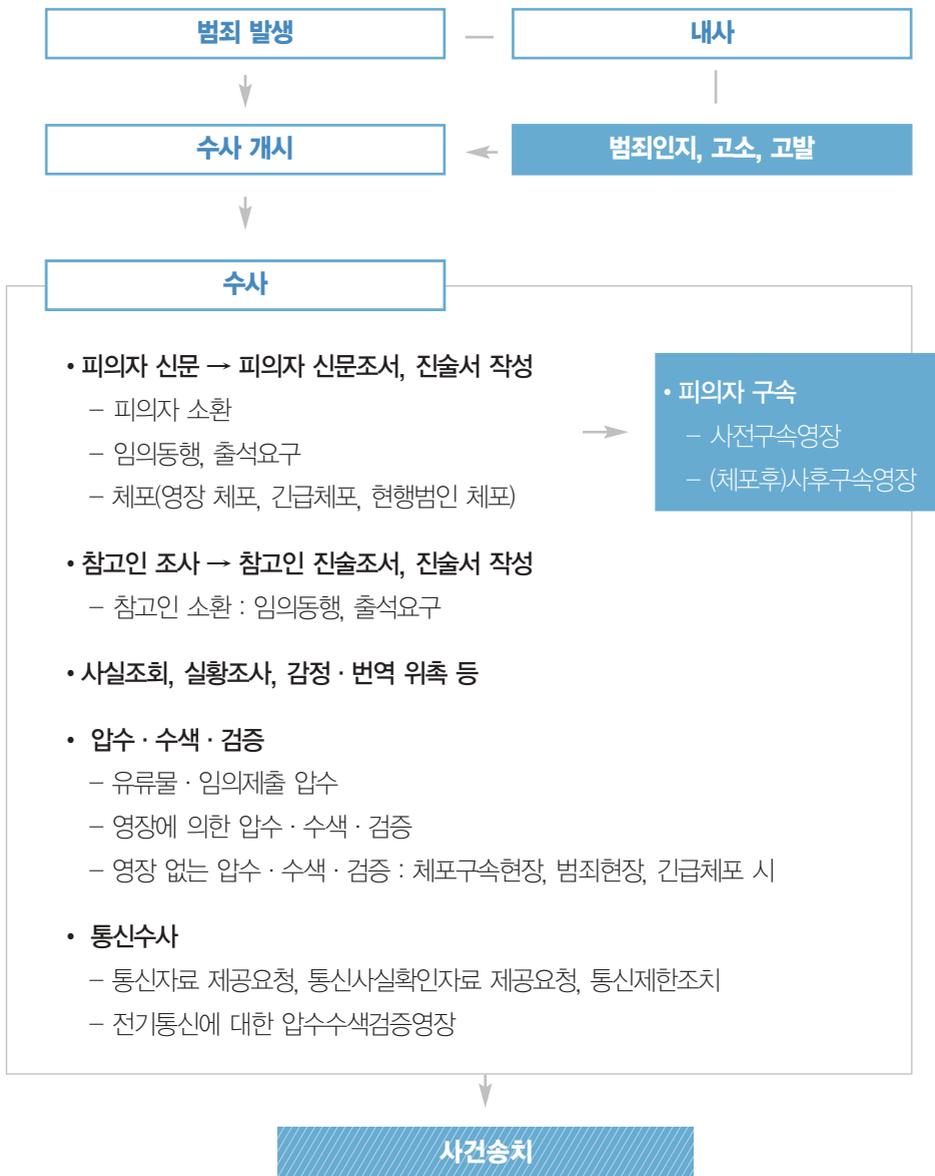
5) 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6) 법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7) 법 제245조의8(재수사요청 등)

8) 수사준칙 제2조(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제6조(관할)

2. 수사의 흐름



② 수사의 개시

(내사) ... 범죄인지 · 고소 · 고발 → 수사 개시 → 수사의 실행 → 수사종결 → 사건 송치로 이어지는 수사의 단계 중 입건단계로 '수사기관인 특별사법경찰관이 하나의 사건을 범죄사건부에 등재하는 절차를 마치는 단계' 를 말함.

1. 내사

가. 의의

- 수사기관이 범죄정보의 수집 등으로 수사의 단서를 입수하고 수사의 개시 여부(입건절차 실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일련의 조사 활동
- 내사는 필수가 아니며 처음부터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에는 내사 과정 없이 바로 인지수사를 할 수 있음.

나. 법적근거

- 법 제196조, 제199조제1항 및 제2항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4조제1항, 수사준칙 제17조

법 제196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법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①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② 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4조(진정 등 수리) ① 검사는 범죄에 관한 신문 등 출판물의 기사, 익명의 신고 또는 풍설, 첩보의 입수 등으로 범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내사사건으로 수리한다.

수사준칙 제17조(내사)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직무범위에 속하는 범죄에 관한 신문·방송이나 그 밖의 보도매체의 기사, 익명의 신고 또는 풍문이 있는 경우에는 특히 출처에 주의하여 진상을 내사하고, 내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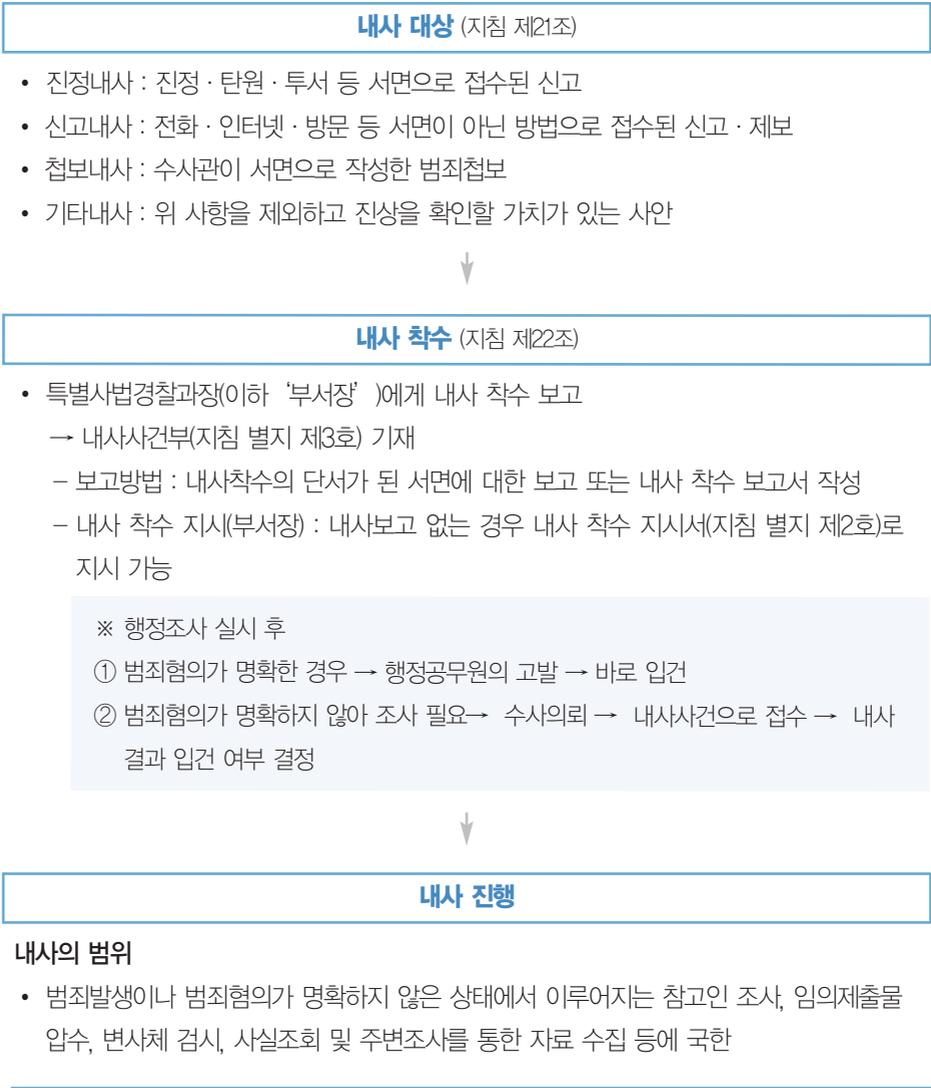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내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내사를 종결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익명이나 가공인물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진정·탄원 및

투서의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여 수사 단서로서 가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내사하지 않을 수 있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진정·탄원 및 투서의 내용이 소관으로 하는 형벌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진정인·탄원인 및 투서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내사하지 않을 수 있다.

다. 내사의 과정



※ 아래 행위 착수 시, 내사의 범위를 넘어 수사 개시로 봄.(수사준칙 제19조, 지침 제28조제2항)

1. 피내사자의 수사기관 출석조사*
 2.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3. 긴급체포
 4. 체포·구속영장의 신청
 5.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대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신청
- * 내사 단계에서 피내사자를 참고인으로 구분하여 조사하더라도 조사형식과 관계없이 신술거부권, 변호인 조력권 등을 고지해야 함.

- 제한적 강제처분 가능
 -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 외의 압수·수색·검증
 - 부검을 위한 검증
 - 출국금지·출국정지 및 입국 시 통보요청*
 - * 대법원 2005다40907, 「출국금지·정지 및 입국시통보 관련 업무처리지침」(대검찰청 예규)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통신제한조치(「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9항, 제6조제2항)

내사에 대한 지시(지침 제26조)

- 부서장의 중요지시*는 서면(지침 별지 제4호 내사지시서 작성 또는 내사서류에 지시사항 기재)으로 함.
 - * 영장 압수·수색·검증 관련, 종결의견 관련, 사건이첩 관련 사항
- 불가피하게 구두 지시를 받은 경우 : 내사보고서에 관련 사항 기재

검사의 내사지휘 건의 (지침 제27조)

-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호 또는 내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입건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한 경우 등 입건·불입건 전에 검사의 지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내사 기간 (지침 제25조, 제30조)

- 내사의 신속진행 의무
- 3개월 초과 : 부서장에게 보고 및 신속종결하도록 노력
- 6개월 초과 : 부서장은 불입건결정을 하도록 해야 함.
 - 계속 내사가 필요하고 수사관이 사유를 소명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내사 연장할 수 있도록 승인 가능

내사 종결

입건 (지침 제28조 제1항, 제32조)

-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내사종결보고 후 범죄인지서(수사준칙 별지 제3호) 작성 및 범죄사건부(수사준칙 별지 제144호) 기록
- 내사사건 기록은 수사기록에 합쳐 편철

불입건 결정 (지침 제29조, 제32조)

- 내사결과보고로 종결처리
- 내사종결사건철 편철(별지 제7호 불입건편철, 기록목록, 내사결과보고서 등)
- 불입건 결정의 종류
 - 내사종결 :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 없음 등에 해당
 - 내사중지 : 피내사자 또는 참고인의 소재불명
 - 내사이첩 : 관할이 없거나 범죄특성 및 병합처리 등을 고려하여 다른 기관에서 내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공람종결 : 진정내사 사건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3회 이상 반복 진정으로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내용
 -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접수된 경우
 - 단순한 풍문이나 인신공격적인 내용인 경우
 -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완결된 사건 또는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인 경우
 -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인 경우
 - 동일 사실에 관한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

※ 검사 사건목록 및 요지 제출 의무(분기별)(수사준칙 제20조)

- 아래 행위 후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 ①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제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 등 법원으로부터 법률에 따라 발부받은 영장 또는 허가서에 의한 대물적 강제처분의 집행
 - ② 현행범인의 체포 또는 인수
 - 검사는 위의 행위가 ① 사건관계인이 검사에게 이익을 제기한 경우 ②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구체적 사건을 특정하여 관계 서류 및 증거물 제출 지시(서면) 가능함.
 - 특별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입건하거나 사건을 종결하려면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함.(수사준칙 제35조제3항)

불입건 결정 통지 (지침 제31조)

- 통지의무 : 내사 결과 불입건 결정을 한 때
- 통지대상 : 피내사자와 진정한 · 탄원인 · 피해자(피해자 사망 시 배우자 · 직계친족 · 형제자매 포함) 또는 법정대리인
 - ※ 통지 대상자의 연락처나 소재를 모르는 경우, 알게 된 때 통지
- 통지방법 : 통지 대상자가 요청한 방법 (ex. 전화, 문자메시지, 팩스, 전자우편 등) 우선, 그 외는 불입건 결정 통지서(지침 별지 제5호 · 제6호) 또는 문자메시지
- 통지기록 관리 : 서면 통지 사본 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
- 불입건 결정 미통지
 - 내사결과보고서에 취지를 기재
 - 미통지 사유
 - ① 통지로 인해 진정한 · 피해자의 생명 · 신체 · 명예 등에 위해 · 불이익이 우려
 - ② 사안의 경중이나 경위, 진정한 · 피해자의 의사나 피내사자와의 관계, 분쟁의 종국적 해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통지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경우

2. 수사 개시

가. 수사 개시 시점

- 수사기관이 스스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를 할 때
 - 범죄를 인지한 경우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수리하도록 한 검찰사건사무규칙의 규정은 검찰행정의 편의를 위한 사무처리절차규정이므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범죄를 인지한 것' 으로 보아야 함(대법원 89도648)
 - 실질적인 수사개시를 하였다면 즉시 입건절차 즉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범죄사건부에 등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함.
 - ※ 입건한 피의자는 혐의가 없더라도 반드시 '혐의없음' 의견 등으로 검찰송치

나. 수사 개시의 단서

- 수사기관이 범죄의 혐의를 두고 수사를 개시하게 되는 원인
- 현행법상 수사개시의 단서
 - 자기체험 (수사기관의 직접인지) : 범죄정보 수집, 현행범 체포, 언론기사 및 풍문, 번사체 검시, 타 사건수사 중 범죄발견 등
 - 타인체험 (타인, 피해자 등의 신고) : 고소, 고발, 진정 · 탄원 · 투서, 범죄신고, 자수 등

수사준칙 제18조(범죄인지서)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범죄인지서를 작성해야 한다.

수사준칙 제19조(수사의 개시)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한다.

1.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조사
2.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3. 긴급체포
4. 체포·구속영장의 신청
5.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대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부검을 위한 검증영장은 제외한다)의 신청

수사준칙 제120조(범죄사건부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사건을 접수하거나 입건·수사 또는 송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4호서식의 범죄사건부에 접수일시, 접수구분, 수사담당자, 피의자, 죄명, 범죄일시, 장소, 피해정도, 피해자 등을 기재해야 한다.

③ 수사의 실행

수사(搜查)는 범죄혐의 유무를 명백히 가려내는 절차이며, 또한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관련 범죄사실을 조사하고 공소의 제기 및 수행을 위해 필요한 증거를 발견, 수집, 보존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함.

1. 수사의 방법

가. 임의수사의 원칙과 영장주의

- 수사는 그 방법에 따라 임의수사와 강제수사로 구분되나,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고(임의수사의 원칙), 강제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법관의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함(영장주의).

법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①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나. 임의수사

(1) 임의수사의 의의

- 강제적인 수단에 의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 협력을 얻어서 행하는 수사(법 제199조 제1항)를 말함.

(2) 임의수사의 적법성과 한계

(가) 임의수사의 한계

- 임의수사에 있어서도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함.
- 수사의 필요성은 수사의 조건이므로 범죄혐의가 없음이 명백하거나 소송조건이 구비될 수 없는 때에는 임의수사도 허용되지 않음.
- 임의수사는 상대방의 승낙을 받아서 행할 것을 요함. 그러나 그 승낙은 자유로운 의사를 전제로 함.

(나) 임의수사의 적법성

- 임의수사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임의동행과 보호실 유치, 승낙수색, 승낙유치 및 거짓말 탐지기에 의한 검사 등이 거론되고 있음.
- 피의자의 승낙에 의한 임의동행은 사회통념상 신체의 속박이나 심리적 압박에 의한 자유구속이 있었다고 할 수 없는 객관적 상황이 있는 때에는 허용

(다) 임의수사의 방법

- 수사기관의 요구로 당사자의 승낙을 얻어서 행하는 수사로서, 피의자 신문과 참고인 조사 등이 있고, 타인의 법익침해가 없는 실황조사, 범죄현장의 관찰, 공무소 등에의 사실조회, 촉탁수사(공조수사) 등이 있음.
- 타인의 법익을 제한하나 자발적 승낙에 의하여 행하는 수사로서 증거물 등 수사자료, 즉 임의제출물의 압수(법 제218조)가 있음.

다. 강제수사

- 상대방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강제적으로 실시하는 수사(법 제199조제1항 단서)를 말하며, 형사소송법 상 ① 피의자 체포, ② 피의자 구속, ③ 압수·수색·검증, ④ 증거보전, ⑤ 증인 신문의 청구, ⑥ 감정유치, ⑦ 감정에 필요한 처분이 있고, 특별법상으로는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통신제한조치 등이 있다.

-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담당검사의 지휘를 받는 등 사전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2. 행정조사와 차이

가. 행정조사의 의의

-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
-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행정조사권을 가진 공무원이면서 형사상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의 역할을 하게 되므로, 실무상 명확히 구분되지 않을 수 있음. 행정조사와 수사활동의 근본적인 차이는 '범죄혐의를 가지고 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활동' 인지 여부로, 특별사법경찰관리가 구체적으로 특정 범죄대상에 대하여 범죄혐의를 가지고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한다면 수사로 봐야 함.
 - ※ 수출입물품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물품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절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서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그러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특정한 수출입물품을 개봉하여 검사하고 그 내용물의 점유를 취득하는 행위는 범죄수사인 압수·수색에 해당하여 영장을 받아야 함. (대법원 2014도8719)
 - ※ 국정원의 행정조사 과정에서 조사관들이 000을 위장탈북자로 판단했다면, 이때부터 형사소송 절차가 시작된 것(서울고등법원 2013노2728)

나. 현장조사와 현장수사의 비교

구분	현장조사	현장수사
적용법률	행정조사기본법	형사소송법
조사자 신분	조사원(행정기관)	특별사법경찰관리(수사기관)
지휘·감독	상급자의 지시	검사의 지휘·감독
신분증명	조사원 권한 증표(공무원증)	특별사법경찰관증
출입권한	기관장 명의 현장출입조사서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사전통지	원칙적으로 사전통지(증거인멸 등 예외 인정)	불필요
강제처분	불가	가능
영장주의 적용	미적용 * 개별법에 영장 없는 출입·검사권, 수거·폐기권한 등 규정	적용
물건의 점유 취득 시	영치조서 작성, 목적 달성 시 즉시 반환	압수조서 작성 및 압수목록 교부, 필요 시 계속 압수·물수 가능
조사거부	벌칙	공무집행방해죄
당사자 진술	확인서 작성 * 진술거부권 고지 불필요	진술서 작성 * 진술거부권 고지 필요
사후절차	적발경위서 작성, 형사처벌 해당 시 수사익뢰·고발	범죄인지서 작성(인지사건으로 입건)

3.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 수사관은 수사의 진행상황을 사건관계인에게 적절히 통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수사준칙 제9조)
-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의무(지침 제16조)
 - 통지대상 :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피해자 사망 시는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포함) 또는 법정대리인
 - ※ 통지 대상자의 연락처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알게 된 때에 통지
 - 통지방법 : 통지 대상자가 요청한 방법 (ex.전화, 문자메시지, 팩스, 전자우편 등)이 우선, 그 외는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지침 별지 제1호)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
 - 통지기록 관리 : 서면통지 시 사본을 수사기록에 편철하고, 그 외의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 수사보고서에 그 취지를 기재
 - 수사진행상황의 미통지
 - ▶ 미통지 사유
 - ① 통지 대상자가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 ② 통지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수사 진행상황을 미리 고지한 경우
 - ③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 ④ 사건관계인에 대한 보복범죄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 미통지 시 수사보고서에 취지를 기재

4. 임의수사

가. 피의자신문(訊問)

-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사실관계를 물어 조사하는 것을 말함.
- 피의자신문은 수사기관이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진술을 통하여 직접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일 뿐만 아니라, 피의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음.

- 피의자신문의 흐름

피의자의 소환

출석요구

- 법 제200조, 수사준칙 제36조
- 출석 대체 방법(우편, 전자우편, 전화 등) 우선 고려
- 피조사자 및 변호인과 일시·장소 협의
- 요구방법 : 출석요구서(수사준칙 별지 제10호) 발송, 부득이한 경우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가능
 - 출석요구서 사본이나 그 취지를 적은 수사보고서를 사건기록에 편철, 출석요구통지부(수사준칙 별지 제12호) 작성
- 출석요구 시 주의사항
 - 사건의 요지 등 출석사유 간략히 설명
 - 신분증, 도장, 증거자료, 필요한 자료 등 지참하도록 알림.
 - 변호인의 참여 하에 조사받을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고지
 - 피의자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의 침해가 없도록 주의
 -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시간적 여유를 주고 피의자의 출석일시 연기 요청 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정
- 출석장소 : 수사관서 외의 장소에서도 가능
- 출석 불응 및 퇴거 가능. 다만 피의자의 출석 불응은 체포영장 신청의 사유가 될 수 있음. (피의자 출석 거부 또는 연기 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한 후 이에 대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체포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함)

임의동행

- 법 제199조, 수사준칙 제37조, 지침 제33조
- 임의동행 시 고지의무(동행거부·이탈·퇴거 가능함을 고지)
 - 임의동행 동의서(지침 별지 제11호)를 징구하여 수사기록 편철

범죄사실의 조사

-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조회 의뢰
 - 근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방법 : (요청) 범죄·수사경력 조회 요청서*
(회보) 범죄경력조회서
- * (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
- 범죄경력조회 결과 같은 죄로 처벌 받는 등 참고할 사건이 있는 경우, 선고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에 공문 발송하여 약식명령문 등·사본을 받아 수사기록에 첨부
- 실형선고사실 있는 경우, 관할 구치소 수용기록과에 공문 발송하여, 언제 어디서 어떤 사유로 출소했는지 확인 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고 회신공문 편철

피의자 신문 시 제3자의 참여

참여자

- 특별사법경찰관 신문 시 특별사법경찰관리 참여 의무(법 제243조)

변호인 참여

- 법 제243조의2, 수사준칙 제10조, 제11조
- 신청권자 : 피의자 · 변호인 · 법정대리인 · 배우자 · 직계친족 · 형제자매
- 신청방법 : 변호인 참여신청서(수사준칙 별지 제1호) 또는 구술
- 변호인이 수인이면 피의자가 신문 참여할 변호인 1인 지정
 - 수사관은 대표변호인의 지정 · 지정철회 · 변경을 검사에게 건의 가능(수사준칙 별지 제2호)
- 변호인 참여 제한
 - 제한사유 : 증거를 인멸 · 은닉 · 조작할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거나, 신문 방해, 수사 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 피의자신문 중에도 참여 제한 가능
 - 변호인 참여 제한처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 제기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다른 변호인을 참여시킬 기회를 주어야 함.
- 변호인 신문 참여 및 제한사항을 조서에 기재
 - ※ 변호인 참여의 기회를 주었으나 피조사자가 변호인을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 변호인 없이 조사 가능
- 변호인은 피의자 옆자리 등 실질적 조력 가능한 위치에 착석, 법적인 조언 · 상담 · 메모 허용
- (신문中) 특별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 진술 가능*,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 이의 제기 가능(승인 不要)
 -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의견진술 요청을 승인해야 함.
- (신문後) 조서열람 및 의견 진술 가능, 별도의 서면으로 의견제출 가능(사건기록에 편철)
 - 변호인 의견진술 ·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조서에 내용을 기재하고 변호인 열람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간인 不要)
 - ※ 변호인 등의 신문 · 조사 참여 운영지침 참조(대검찰청 예규)

신뢰관계인 동석

- 법 제244조의5, 제221조, 제163조의2, 수사준칙 제41조, 지침 제35조
- 신청권자 : 피조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수사관의 직권
- 신뢰관계인 : 피조사자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교육시설의 보호·교육담당자 등 피의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 동석 사유
 -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
 - 피조사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심리적 안정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신청방법 : 동석신청서(수사준칙 별지 제13호) 제출이나 조서·수사보고서에 관계 기재
 - 관계를 소명하는 자료 징구(조사가 긴급하거나 동석 필요성이 현저한 경우, 조사 후 징구 가능)
- 동석 거부·제한 사유
 - 동석거부 :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조사 중 동석 제한 : 신문방해, 진술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시



피의자 신문 과정

인정신문

- 법 제241조, 수사준칙 제44조
- 피의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
 - 1) 피의자의 성명, 연령,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
 - 2) (법인·단체) 명칭, 설립목적, 소재지, 기구와 대표자 성명, 주거
 - 3) (외국인) 국적, 주거, 출생지, 입국연월일, 입국목적, 외국인 등록번호
- 인정신문 내용은 조서(수사준칙 별지 제17호(갑)) 기재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 법 제244조의3, 수사준칙 제46조, 지침 제36조
- 고지사항
 - 1) 일체의 진술 거부 또는 개개의 질문에 대한 진술 거부 가능
 -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 3)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 참여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 고지방법 : 고지사항 1~4항의 내용을 조사자가 피의자에게 1항목씩 천천히 읽어주고 “이해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이해하였다면 다음 항목을 읽어주며 반복 확인

고지대상

- 좁은 의미의 신문 뿐 아니라 피의자의 진술을 듣는 조사활동 전반

고지입증

-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행사 여부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은 조서(수사준칙 별지 제17호(을))에 기재
 - 피의자의 자필로 답변 기재 또는 수사관이 피의자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피의자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
-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수사준칙 별지 제24호) 징구

고지시기

- 피의자신문 前
 - ※ 조사를 상당 시간 중단하거나 회차를 달리하거나 수사담당자가 교체된 경우에도 재고지 (지침 제36조)

고지의무 위반

- 진술거부권 고지 없이 신문한 진술을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부정
 - ※ 고지사항 전부를 읽어주지 않거나 출력해서 보여준 경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부정사유가 될 수 있음.

진술거부 시 조서 작성 방법

- 1)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수사준칙 별지 제24호)를 자필로 기재
- 2) 조서 및 수사 과정 확인서(수사준칙 별지 제15호 · 제16호) 작성
 - 문** 피의자가 흥길동이며,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답** (피의자의 답변 내용을 기재하고, 답변하지 않으면 그 상태에서 조서를 출력하여)
 - 말미용지(수사준칙 별지 제21호)에 서명, 날인을 받고, 조서에 간인 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서명, 날인, 간인도 거부 시 그 취지를 조서말미에 기재)
- 3) ‘수사보고(피의자 진술거부권 행사로 조사불능)’ 제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

메모의 권리 안내

- 피의자신문 내용을 메모할 권리가 있음을 안내(지침 제37조)
- 안내 시기 : 피의자 신문 前
- 안내 방법 : 메모의 권리 및 메모 제한 내용을 구두 안내, 메모용지와 필기도구 제공
- 메모의 제한 : ① 조사과정에서 현출된 타인의 진술 등 공범의 도피, 증거인멸, 수사기밀 누설 등의 우려가 있을 때, ② 제3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이나 생명·신체의 안전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수사자료표 작성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수사준칙 제27조
- 작성대상 : 인지 사건 및 고소·고발 사건 피의자
 - ※ 작성 제외 : ① 즉결심판대상자 ② ‘고소·고발사건’ 이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공소권 없음, 죄가안됨, 각하, 참고인중지)사유에 해당하는 피의자
- 작성방법 : 라이브 스캐너를 이용하여 피의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지문 채취(지문의 융선과 삼각도가 완전히 현출) 후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E-CRIS) 입력
 - ※ 오른손 엄지손가락 지문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왼손 엄지손가락 → 오른손 둘째·셋째·넷째·다섯째 손가락 → 왼손 둘째·셋째·넷째·다섯째 손가락 순으로 채취
- 지문날인 거부 시
 - 체포·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영장 없이 강제적 채취 가능
 - 불구속 피의자나 석방된 피의자의 경우,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거나 동일인 여부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등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소명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채취



피의자 신문 실시

- 법 제242조, 제245조, 수사준칙 제42조, 제44조, 제45조, 제47조
- 신문사항 : 범죄사실 및 정상관계
 - 범죄사실에 대하여 6하 또는 8하 원칙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함.
- 피의자신문을 통해 피의자신문조서(회차에 따른 서식이 다름, 수사준칙 별지 제17호·제18호) 또는 진술서의 작성
- 조사시작 전 피조사자에게 조사 경위 및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 부여, 피의사실에 대한 의견 및 조사 요구사항 청취 가능
- 조사종결 전 피조사자에게 자료 또는 의견 제출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제출받은 자료 및 의견은 수사기록에 편철
- 공범조사 및 대질신문
 - 공범자에 대한 조사 : 분리조사가 원칙, 필요 시 대질신문 가능
 - 공범자 외 참고인에 대한 대질조사 :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참고인 동의 시에만 가능
 - ※ 대질신문 시는 피조사자를 동시 입실시키고 일방의 진술제지를 자제하여 편파수사 우려 차단

조사 시 제한

- 수사준칙 제38조 ~ 제40조, 제47조, 지침 제34조
- 피조사자 출석 시 지체없이 조사하고, 부득이하게 늦어지거나 조사를 못하게 되면 사유를 설명해줘야 함.
- 제한대상 : 피조사자에 대한 조사, 신문, 면담 등 명칭 불문한 모든 조사활동
- 심야조사 제한 :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 사이, 단 이미 작성된 조서의 열람 절차는 자정 이전까지 가능
 - 제외사유
 - 1) 피의자 체포 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여부 판단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 2)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 3) 피조사자가 출국, 입원, 원거리 거주, 직업상 사유 등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심야조사를 요청한 경우(변호인이 심야조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 제외)로서 해당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장시간 조사 제한
 - 대기, 휴식,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총조사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면 안됨.
 - 총조사시간 중 식사, 휴식, 조서 열람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면 안됨.
 - 조사종료 후 8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재조사 불가(제외사유 2~4번에 해당하는 경우는 가능)
 - 제외사유
 - 1) 피조사자의 서면 요청(지침 별지 제9호)에 따라 조서를 열람하는 경우
 - 2) 피의자 체포 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여부 판단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 3)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 4) 피조사자가 출국, 입원, 원거리 거주, 직업상 사유 등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장시간 조사를 요청한 경우(변호인이 심야조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 제외)로서 해당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휴식시간 부여
 - 장시간 조사 도중 최소한 2시간마다 10분 이상 휴식 부여
 - 피조사자가 휴식시간을 요청한 경우,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부여
 - 피조사자 건강상태에 이상이 있는 경우, 의사진료를 받게 하거나 휴식 등 조치를 취해야 함.

영상녹화

- 법 제244조의2, 수사준칙 제49조, 제50조, 지침 제39조
- 피의자 조서 작성 시 필요한 경우 조사과정 녹화 가능, 영상녹화 시 미리 고지해야 함.
- 고지사항
 - 1) 조사자 및 참여자(법 제243조)의 성명과 직책
 - 2) 영상녹화 사실 및 장소, 시작 및 종료시간
 - 3) 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 등

-
- 4) 조사중단·재개 시 중단 이유와 중단 시각 및 중단 후 재개 시각
 - 녹화시점 :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피조사자의 조서 기명날인 또는 서명 시점)까지的全过程
 - ※ 조사 시작 후 녹화 필요한 경우, 진행 중인 조사를 종료하고 다음 조사의 시작부터全过程 영상녹화
 - ※ 조서 정리에 장시간이 필요한 경우, 조서정리과정은 생략하고 조서열람 시부터 녹화 재개 가능
 - ※ 여러 차례의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 최초의 조사부터 모두 영상녹화해야 하는 것은 아님.
 - 녹화물 제작 방법
 - 1) 녹화 시 조사실 전체 확인가능하도록 하고 피조사자 얼굴과 음성을 식별가능하게 해야 함.
 - 2) 영상녹화용 컴퓨터에 저장된 영상녹화파일을 이용하여 영상녹화물(CD, DVD 등) 1개 제작
 - 3) 영상녹화물 제작과 함께 컴퓨터에 저장된 영상녹화파일을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전송 보관 가능 → 영상녹화물 손상·분실 시 파일을 이용해 영상녹화물 재제작 가능
 - 4) 녹화물 표면에 사건번호, 죄명, 피조사자 성명 등 사건정보 기재
 - 봉인절차 :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그 원본 봉인 후 봉인 봉투 겉면에 피의자 기명날인 또는 서명 받음.
 - ※ 봉인 전 피조사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으면 녹화물을 재생 시청 → 이의 진술시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
 - 영상녹화물은 사건번호, 죄명, 피조사자 성명 등 사건정보를 표면에 기재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고, 사건 송치 시 함께 송부(수사준칙 제112조)
 - ※ 송치서 표지 비고란에 영상녹화물의 종류와 개수를 표시
-

수사과정의 기록

- 법 제244조의4, 수사준칙 제43조
 - 기록대상 : 피조사자에 대한 조사(신문, 면담 등 명칭 불문)
 - 기록사항
 - (조서 작성 시) 피조사자의 조사장소, 도착 시각, 조사 시작 및 종료 시각, 도착 시각과 조사 시작 시각에 상당한 시간차가 있는 경우 그 이유, 조사가 중단 후 재개된 경우 그 이유 및 중단·재개 시각
 - (조서 미작성 시) 피조사자의 조사장소 도착 시각과 떠난 시각, 조서 미작성 사유, 조사 외 실시한 활동, 변호인 참여 여부
 - ※ 출장조사 시에는 출장 조사지를 조사장소로 두고 작성
 - 기록방법
 - (조서 작성 시) 조서에 기록(수사과정확인서(수사준칙 별지 제15호) 기록 후 조서 끝 부분에 편철 포함)
 - (조서 미작성 시) 수사과정확인서(수사준칙 별지 제16호) 기록 후 수사기록 편철
-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후

피의자 신문조서 확인

- 법 제244조, 제312조제3항, 제314조, 수사준칙 제45조
- 피의자 열람, 이의제기 및 의견진술
 - 피의자에게 열람하거나 읽어 들려주고,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야 함.
 - ※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 진술시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며,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함.
- 피의자 의견이 없을 시, ① 말미서식(수사준칙 별지 제21호· 제22호)의 진술자 및 조사자란에 피조사자와 조사자가 각각 서명·날인하고 ② 조서의 앞·뒷장에 명확하게 날인(무인)하여 간인하되 피조사자는 조서의 오른쪽 끝부분에 간인하고 조사자는 왼쪽 끝부분에 간인하며 ③ 조서 끝 여백에 피조사자와 조사자가 나란히 날인(무인)함.
 - ※ 피의자의 서명만 있고 날인 또는 무인이 없거나 간인이 없는 경우,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부정(대법원 99도237)
- 대질조사 후 조서 : 자신이 진술한 부분만 열람 → 피의자는 전부 간인, 참고인은 자신이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인

1. 피의자신문조서(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의 증거능력

- ①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형식적 진정성립)으로
- ② 공판준비·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실질적 진정성립) 증거능력 인정

2.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 공판준비·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그 조서 및 서류 등의 증거능력 인정

*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

수사과정 확인서 기재사항 확인

- 피의자신문조서 확인방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피의자 확인
 - 이의제기 또는 의견 진술사항을 추가 기재하거나,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그 취지를 자필기재(법 제244조의4제2항)

❖ 피의자 신문 방법과 조서 작성

(1) 신문 시 유의사항

- 가급적 외부와 차단된 비공개 장소에서 조사하는 것이 적당하며, 비공개 장소가 없다면 조사장소에 제3자가 대기하거나 출입하지 않도록 함.
- 공격이나 자해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송곳이나 칼 등 위험한 물건을 손이 미치는 곳에 두지 않도록 해야 함.
- 피의자에 대한 호칭은 통상적으로 ○○○씨로 하되 조서에는 피의자로 기재
- 질문은 짧고 답변은 길게 하며, 법률적 용어는 피함. (질문이 길고 답변이 극히 짧다면 유도신문을 한 것 같은 느낌을 줄 우려가 있다.)
- 진술취지를 명백히 해야 하고 체험사실, 추측의견, 타인으로 전해들은 사실을 확실하게 구분해야 함.
- 진술요지를 그대로 기재하며 이치에 맞지 않더라도 내용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됨.
- 피의자에게 허위진술의 징표가 나타나든가, 계속 부인하여 버티다가 가까스로 자백하기에 이른 경우 등 필요할 때에는 진술자의 진술 태도 등을 기입하여 진술 당시의 상황을 명백히 알 수 있도록 함.
- 진술내용에 변화가 있을 때에는 왜 그와 같이 변화가 있게 되었는가를 묻고 그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대답을 조서에 기재
- 수사관이 자신의 가설검증을 위해 필요한 질문을 중심으로 문답을 구성하는 경우 진술인에게 영향을 미쳐 진술의 오염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개방형 질문이 바람직함.

(2) 피의자 조서의 작성 방식

- 조서에는 모든 범죄사실(문답으로 구체화)과 증거조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피조사자의 답변이 긴 경우, 제3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1문장씩 끊어서 기재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함.
- 사건과 무관한 진술을 기재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피조사자가 꼭 넣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조서 말미에 쓰게 하거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함.
- 삭제할 때 : 조사자가 삭제할 부분에 두 줄의 선을 긋고 삭제한 부분에 피조사자가 날인(무인)하고 조사자가 좌측 여백에 “삭○자” 라고 기재하고 날인
- 추가할 때 : 해당 부분에 조사자가 삽입표시(∨)를 하면 피조사자가 삽입표시의 윗부분에 추가할 문자를 기재하고 날인(무인)하고 조사자는 좌측 여백에 “가○자” 라고 기재하고 날인

- 정정할 때 : 조사자가 삭제할 부분에 두 줄의 선을 긋고 삭제한 부분에 피조사자가 그 윗 부분에 문자를 기재하고 날인(무인)하며 조사자가 좌측 여백에 “가○자, 삭○자” 라고 기재하고 날인

(3) 외국인이나 장애인인 피의자에 대한 조사

- 피조사자가 외국인 경우 원칙적으로 모국어로 사용하는 언어에 능통한 통역인을 선정하여야 하나, 적절한 통역인을 찾지 못한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다른 언어로 조사함.
- 통역을 위촉한 경우에는 먼저 통역인 진술서 또는 통역인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자격을 확인한 다음 통역에 임하게 함.

※ 농아자의 통역인에 대한 진술서 또는 진술조서 작성례

1. 통역인의 인적사항 기재
2. 저는 수화에 대한 전문가로서 00시 00구 00동 000에 있는 00농아학교에서 교사로 재직 중인 김00입니다.
3. 저는 그 동안 수심 회에 걸쳐 법원, 검찰청, 경찰서 등에서 농아자를 심문할 때 통역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4. 저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농아자 000의 통역을 위촉받고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5. 조금 전에 이 곳에서 000와 수화를 해본 결과 000은 수화학교에서 정식으로 수화를 배운 사람이어서 통상의 대화를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6. 000의 통역을 함에 있어서 문답내용을 성실히 통역하여 조금이라도 잘못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 기타사항
8. 말미서식

- 한국어로 작성된 조서는 통역인을 통하여 피조사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수사준칙 별지 제22호서식을 사용하여 통역을 통하여 읽어주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통역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음.
- 청각장애인이나 언어장애인 기타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조사자 본인, 보호자, 법정대리인 등의 신청에 따라 수화·문자통역을 제공하거나 의사소통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참여시켜야 함. 이 때 피조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와 같은 절차로 조사함.

나. 참고인 조사

- 참고인은 범죄사건부에 기재된 피의자 이외의 제3자를 말함
-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진술청취, 조서작성 방법 등은 피의자에 대한 것과 대체적으로 같으나, 참고인 조사는 신문하는 것이 아니고 진술을 청취하는 것임.
- 참고인 조사와 피의자 신문의 차이점

구분	참고인 조사
소환방법	<p>법 제221조, 수사준칙 제36조, 제37조, 제47조, 지침 제33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의자 출석요구·임의동행과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석요구 : 참고인 출석요구서(수사준칙 별지 제11호), 부득이한 경우 전화, 문자메세지 등으로 가능, 출석요구 통지부(수사준칙 별지 제12호) 기재 - 임의동행 : 임의동행 동의서(지침 별지 제8호) 징구 • 출석·동행 불응, 퇴거 등 자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의자의 출석 불응은 체포영장 신청의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참고인은 체포·구속의 대상이 아님.(참고인 출석불응 시는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
범죄경력 등 조회	• 대상 아님.
참여자	•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참여 의무 없음.
변호인 참여	• 변호인 참여권이 보장되며 참여신청, 참여방법, 참여제한사유 등은 피의자신문과 동일(수사준칙 제10조)
신뢰관계인 동석	• 피해자인 참고인(법 제221조제3항, 제163조의2, 수사준칙 제41조) 및 그 외 참고인(지침 제35조)에 적용
진술거부권 등 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 아님. ※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 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진술거부권 고지의무 있음.(대법원 2014도5939)
조사사항	• 신문이 아닌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인정신문 없음)
조사시간 제한	• 장시간·심야조사 제한, 휴식시간 부여 등은 피의자 신문과 동일(수사준칙 제38조~제40조)
영상녹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221조제1항, 수사준칙 제49조, 제50조 • 참고인의 동의(수사준칙 별지 제25호)를 받아 영상녹화 가능 • 영상녹화 시 고지사항 : 피의자에 대한 고지사항 중 진술거부권 고지를 제외한 사항 • 영상녹화 시 참여자 동석의무 없음. • 영상녹화의 방법 및 봉인절차 등 동일

구분	참고인 조사
수사과정의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의자 신문과 동일(법 제244조의4제3항, 수사준칙 제43조)
조사 작성 및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221조제1항, 제312조제4항, 제314조, 수사준칙 제45조 참고인 진술조서(수사준칙 별지 제19호·제20호)나 진술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인 진술조서 작성방법 및 확인절차는 피의자신문조서와 동일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1. 참고인진술조서(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의 증거능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조서가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 준비·공판기일에서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공판기일에 그 기재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것으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증거능력 인정 <p>*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p> <p>2.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p> <p>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그 조서 및 서류 등의 증거능력 인정</p> </div>

❖ 참고인 조사 시 유의사항

(1) 참고인의 권익 존중

- 참고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자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범죄수사에 관하여 자신의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여 주는 수사의 협조자이므로, 설득력을 발휘하여 진술을 받아 내고 신문할 때 불쾌감을 주거나 그의 명예를 훼손하는 언동을 해서는 안 됨.
-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의무는 없으나 변호사의 참여 하에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함.

(2) 소환조사에 앞서 조사가치를 충분히 검토

- 참고인을 조사할 때에는 먼저 그 사건과의 관계를 확인하여 진술을 청취할 가치가 없거나 오히려 수사기밀만 누설시키는 결과가 될 경우에는 조사를 하여서는 안 되고, 부득이

조사하는 경우라면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

- 참고인이 종종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과 추측한 사실, 그리고 전해들은 사실을 혼동하여 마치 직접 경험한 것처럼 진술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확인하여 증거 자료로서 가치를 판단하도록 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필요한 진술을 요령 있게 정리하고, 진술의 정확성을 확인함.
 - ※ 자기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타인의 참고인으로 등장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고, 그 진술에 모순이 있으면 명확히 규명

다. 진술서(법 제312조 및 제313조, 수사준칙 제45조제7항, 제8항)

- 진술서는 문답형식을 취하는 진술조서와는 달리 진술자 스스로 진술의 요지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증거의 일종임.
- 피조사자가 서면 진술을 원할 때, 진술사항이 복잡하고 피조사자가 서면 진술에 동의할 때, 그 밖에 서면 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진술서(수사준칙 별지 제23호)를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 진술서는 반드시 피조사자가 자필로 작성하도록 해야 하고 수사관이 대신 작성해서는 안된다.
- 수사기관이 조사에 앞서 피조사자에게 요구하여 피조사자가 작성 제출하는 진술서나 수사기관이 피조사자를 조사하고 조서 작성에 갈음하여 작성제출한 진술서의 경우에는 수사과 확인서(수사준칙 별지 제16호)를 첨부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의 요구 없이 피조사자가 집 등에서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에 대하여는 不要)
- 피의자 신문 시 피의자에게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 거부권 등의 고지사실과 피의자의 답변에 대하여 확인서(수사준칙 별지 제24호)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해야 함.(수사준칙 제46조)
- 진술서 확인절차
 - 진술자란에 진술자가 서명·날인 및 진술서의 끝 여백에 진술자 날인(무인)
 - 진술서의 앞·뒷장에 날인(무인)하여 간인(진술서의 오른쪽 끝부분)
 - 우편으로 진술서를 받는 경우에는 조사자가 진술서의 서식을 참고인에게 송달하고 참고인으로부터 자필 진술서를 송달받게 되는데, 참고인으로 하여금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고 우편 진술서에 서명·날인하도록 함.
- 진술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진술서를 제출받았을 때는 그 자리에서 진술서의 내용을 검토해야 함.

- 진술내용이 사건 현장 상황과 부합되지 않거나 경험칙에 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작성토록 함.
- 사건처리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내용이라면 진술을 반복할 경우에 대비하여 조서를 작성해 두도록 하여 피조사자를 다시 소환하는 일이 없이 수사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라. 실황조사(수사준칙 제52조)

- 실황조사는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강제력을 사용하지 않고 범죄현장 그 밖의 범죄 관련 장소·물건·신체 등에 대하여 그 존재 및 상태를 오관의 작용에 의하여 실험·경험·인식한 사실을 명확히 하는 수사활동임.
- 실질은 검증과 동일하나, 실황조사는 임의절차이고 검증은 강제절차에 해당
- 실황조사 시에는 실황조사서(수사준칙 별지 제26호)를 작성해야 하며 현장도면이나 사진 등을 첨부할 수 있음.(지침 제40조제1항)
- 피의자의 진술을 실황조사서에 작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 신문에 관한 법 제244조의3 및 제244조에 따라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피의자 진술부분의 확인 및 기명날인 또는 서명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지침 제41조)
-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사고 당시의 상황을 재연한 사진과 그 진술내용으로 된 사법경찰관 작성 실황조사서에 대하여 ‘공판정에서 진술내용 및 범행재연의 상황을 모두 부인’ 하는 경우 증거능력 부정(대법원 84도378)
 -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실황조서가 ‘사고발생 직후 사고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 없이 시행’ 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16조제3항에 의한 검증에 따라 작성된 것’ 이라면 사후영장을 받지않은 경우 증거능력 부정(대법원 83도3006)

마. 감정의 위촉

- 감정은 특별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제3자의 보고를 요구하는 증거조사로,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감정기관에 감정을 위촉할 수 있다.(법 제221조제2항) 감정의 위촉은 임의수사이지만 감정을 실행함에 있어서 유치처분 또는 신체검사 등 강제처분을 수반하는 경우도 있다(법 제221조의3, 제221조의4, 수사준칙 제89조)
- 감정위촉의 절차

- 감정위촉서(수사준칙 별지 제116호)를 교부하여 감정인으로 하여금 감정의 일시·장소·경위 및 결과를 기재한 감정서를 제출받는다.(수사준칙 제89조제3항)
- 감정서의 기재내용에 의문이 있거나 부족한 것이 있다면 감정인을 참고인으로 조사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의문사항을 정리하여 우편진술서로 우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감정위촉 시 유의사항
 - 감정물은 반드시 원본으로 의뢰하고 보호봉투를 이용하여 송부
 - 비교자료는 감정자료와 발생시기가 가장 근접한 자료를 송부한다.
 - 모든 감정물과 감정의리 내용은 명확히 특정하여야 한다.
 - 증거물이 훼손되거나 형상이 변경될 우려가 있는 감정을 위촉할 때에는 조서에 그 성질과 형상을 상세히 기재하거나 촬영하는 등 변경 전의 형상을 알 수 있도록 특히 유의해야 한다.(수사준칙 제75조)

바. 수사사항의 조회(법 제199조제2항, 수사준칙 제53조)

- 수사에 관하여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수사사항조회서(수사준칙 별지 제27호)를 송부하는 방법으로 하며, 회답을 하지 않는 경우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 또한 회답내용이 개인정보보호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보호되는 경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자료를 취득해야 한다.

5. 체포와 구속(대인적 강제수사)

가. 체 포

(1) 체포의 의의

- 수사 초기 피의자신문을 위하여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할 목적으로 단기간 동안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는 대인적 강제처분
-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는 「체포·구속업무처리지침」(대검찰청 예규) 준수

(2) 체포의 절차

체포의 요건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법 제200조의2)

- 대상 : 피의자
- 체포 요건
 - ①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
 -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 불응 또는 불응 우려
(예외) 다액 5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사건 :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출석요구에 불응한 경우에 한함

긴급체포 (법 제200조의3)

- 대상 : 피의자
- 체포 요건
 - ① 사형·무기·장기 3년 이상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 ②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 ③ 긴급을 요하여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
*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

현행범인 체포 (법 제211조, 제212조, 제214조)

- 대상 : 현행범인
- 체포 요건
 - ① 현행범인 : 범죄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직후인 자
 - ② 준현행범인
 - 범인으로 호칭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
 -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흥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한 때
 -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거가 있는 때
 -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
(예외) 다액 5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사건 :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만 현행범인 체포 가능

체포 절차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 ① 특별사법경찰관의 체포영장 신청(검사)
 - 피의자별로 신청
 - 제출서류 : 체포영장신청서(2부)(수사준칙 별지 제30호), 범죄사실 요지를 기재한 서면 1통(청구영장 수에 따라 각 1통) 체포의 사유 및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엄격한 증거가 아닌 소명자료로 충분) (규칙 제93조, 제95조, 제96조, 수사준칙 제55조)

※ 체포영장청구서(신청서)의 기재사항(규칙 제95조)

1. 피의자의 성명(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주민등록번호 등, 직업, 주거
2.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그 성명
3. 죄명 및 범죄사실의 요지
4.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
5. 여러 통의 영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
6. 인치구금할 장소
7. 법 제200조의2제1항에 규정한 체포의 사유
8.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
9. 현재 수사 중인 다른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발부된 유효한 체포영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그 범죄사실

- 체포영장신청부(수사준칙 별지 제31호) 기재
- ② 검사의 청구
- ③ 지방법원 판사의 영장 발부
- ④ 체포영장의 집행(법 제200조의6, 제81조, 제85조, 제86조, 수사준칙 제54조)
 -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행
 - 피의자에게 '체포영장 원본을 사전 제시' (교부x)
 -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의사실의 요지와 체포영장 발부사실을 고지하고 집행 → 집행 완료 후 신속히 영장 제시
 - 영장에 기재된 장소로 호송(체포된 피의자의 호송 중 필요 시에는 가장 인접한 경찰청 유치장 등에 임시 유치 가능)
- ⑤ 체포 · 구속영장 집행원부(수사준칙 별지 제29호) 기재
- ⑥ 체포 · 구속인명부 (수사준칙 별지 제54호) 작성 (수사준칙 제68조)

긴급체포

특별사법경찰관 체포



- ① **특별사법경찰관**의 긴급체포서(수사준칙 별지 제32호) 작성 및 긴급체포원부(수사준칙 별지 제33호) 기재(수사준칙 제57조)
 - 특별사법경찰리가 긴급체포한 경우에도 체포자의 관직, 성명란에는 지시한 특별사법경찰관과 체포한 특별사법경찰리 모두 기재
 - 긴급체포사유란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증거를 인멸한 염려 또는 도망이나 도망할 우려가 있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기재하여야 하며,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체포의 과정과 상황 등을 자세히 기재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속영장청구기록에 편철하여야 함.

- ② 체포 후 12시간 이내(기소중지 피의자를 시외 지역이나 바다에서 긴급체포 시 24시간 이내) 검사에게 승인 건의*
- * 긴급체포승인건의서(수사준칙 별지 제34호)가 원칙, 긴급 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나 팩스로 건의 가능
- ③ 체포·구속인명부 작성(수사준칙 별지 제54호)(수사준칙 제68조)

현행범인 체포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



- ① 사인이 체포 → 즉시* 검사·사법경찰관리에 인도(수사준칙 제58조)
- * 정당한 이유 없이 인도를 지연하거나 체포를 계속하는 등 불필요한 지체를 함이 없이
- ②-1 특별사법경찰관리의 현행범인 체포 시 현행범인체포서(수사준칙 별지 제35호) 작성
- ②-2 특별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 체포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직업·주거, 체포의 일시·장소·사유를 묻고 필요 시 체포자에게 동행 요구 가능 → 현행범인인수서(수사준칙 별지 제36호) 작성
- ③ 현행범인체포원부(수사준칙 별지 제38호) 작성(수사준칙 제59조)
- ④ 체포·구속인명부 작성(수사준칙 별지 제54호)(수사준칙 제68조)

체포 시 유의사항

- 법 제200조의5, 제214조의2, 수사준칙 제54조, 제57조, 제58조, 지침 제43조
 -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며, 상대방의 신분증을 확인(주민등록법 제26조)
 - **(고지사항)** 체포 시* ① 피의사실의 요지, ② 체포의 이유 ③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④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⑤ 진술거부권** 및 ⑥ 체포적부심사 청구의 권리를 고지
- 피의자에게 ‘권리 고지 확인서(지침 별지 제12호)’ 징구 후 사건기록에 편철
- * ‘체포 시’의 의미
- ‘피의자의 도주나 폭력행사 등이 없는 상황에서 먼저 체포 후 고지’는 불법체포(대법원 2017도10866)
 -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경우 실력으로 제압한 후’ 지체없이 고지 가능(대법원 2011도7193)
 - 사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경우는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사인으로부터 현행범인을

인도받을 때 고지

** 진술거부권 고지사항(법 제244조의3제1항제1호~제3호)

-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체포 시 압수·수색·검증(영장주의의 예외)

- 사전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이 가능한 경우(법 제216조, 제217조)
 - ①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영장 없이 피의자 수색(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
 - * 영장에 의한 체포는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 있는 경우에 한함
 - ②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 ③ 긴급체포된 피의자가 소유·소지·보관하는 물건에 대해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함)
- 압수물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으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 영장 청구, 발부받지 못한 경우 즉시 압수물을 반환해야 함.

체포영장의 발부 → 미집행

- 체포영장이 집행 불능이거나 불필요한 경우(ex. 피의자의 사망, 영장유효기간의 도과)
→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영장반환 보고서(수사준칙 별지 제118호)에 영장을 첨부하여 영장을 청구한 검사에게 반환하고 그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수사준칙 제90조)

체포된 피의자의 권리보호 및 처우

- 체포의 통지(법 제200조의6, 제87조, 수사준칙 제61조)
 - 통지기한 : 지체없이(체포한 때부터 24시간 내)
 - 통지대상 : 피의자의 변호인/ 변호인이 없는 경우 피의자가 지정한 재(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중)
 - 통지사항 : 피의사건명, 체포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
 - 통지방법 : 체포·구속 통지서(수사준칙 별지 제44호)
(긴급을 요하는 경우) 전화·모사전송, 그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통지 후 → 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 내 다시 서면통지

- 통지서 사본은 수사기록에 편철(통지대상이 없어 통지하지 못한 경우는 그 취지를 수사보고서에 적어 수사기록에 편철)
- 체포 적부심사 청구의 통지(법 제214조의2, 수사준칙 제61조)
 - 통지기한 : 지체없이(체포한 때부터 24시간 내)
 - 통지대상 : 피의자 및 피의자가 지정한 자(변호인 · 법정대리인 · 배우자 · 직계친족 · 형제자매 · 가족 · 동거인 또는 고용주 중)
 - 통지방법 : 체포 · 구속 통지서(수사준칙 별지 제44호)
 - * 체포의 통지와 달리 예외규정 없음.
 - 체포영장의 등본 교부 : 적부심사 청구권자의 교부요청에 따라 등본 교부 후 체포 · 구속 영장등본교부대장(수사준칙 별지 제45호)을 작성 (규칙 제101조, 수사준칙 제62조)
- 변호인 선임의뢰 및 통지 : 체포된 피의자가 변호인 선임의뢰를 한 경우, 변호인 선임 의뢰의 통지(변호인 또는 가족 등) → 서면을 수사기록에 편철(법 제200조의6 및 제90조, 지침 제44조)
- 변호인 및 비변호인과의 접견 · 교통 · 수진 보장
 - 변호인(변호인이 되려는 자 포함), 그 밖의 사람(법원의 금지결정이 없는 경우)이 피의자와의 접견, 서류 · 물건의 수수, 의사에 의한 피의자 진료 요청 시 응해야 함. (법 제200조의6, 제89조, 제91조, 수사준칙 제63조, 제65조)
 - 체포 · 구속인 접견부 · 교통부 · 진료부(수사준칙 별지 제46호~제48호)를 작성 (수사준칙 제63조제4항)
 - 피의자 건강상태를 조사하여 체포로 인해 현저하게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검사에게 보고(수사준칙 제66조)



체포 후 절차

- 법 제200조의2, 제200조의4, 제213조의2, 수사준칙 제59조, 제67조
- 구속영장 청구 : **특별사법경찰관은 체포한 때로부터 36시간 이내*** 영장 신청(검사)
 - **48시간 이내****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 * 영장처리시간표를 작성하여 영장기록에 부착하여 검사에게 구속영장 신청(「체포구속 업무처리지침(대검찰청예규)」)
 - ** 체포한 때로부터 법원에 구속영장청구서가 접수할 때까지의 시간 (사인이 현행범을 체포한 경우는 체포 시가 아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부터 기산(대법원 2011도12927))
- 체포된 피의자가 체포 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 법원이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 기간은 48시간 제한기간에 불산입
(법 제214조의2제13항)

- 피의자 석방 시(구금할 필요가 없거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경우) : 검사에게 석방지휘 건의* → 검사의 석방지휘에 따라 석방 → 검사에게 지체없이 석방 보고(수사준칙 별지 제37호·제52호) → 석방일시, 석방사유 기재된 서면을 수사기록 편철, 현행범인을 석방한 경우 현행범인체포원부(수사준칙 별지 제38호)에 석방일시와 석방사유 기재

* 석방지휘건의서(수사준칙 별지 제53호)로 하되, 긴급한 경우 전화, 팩스, 전자우편, 그 밖에 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음.

(3)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법 제200조의2)

(가) 대상

- 피의자만 인정되므로 피내사자, 피고인은 체포영장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법원은 범죄인지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는 체포영장 신청을 기각하고 있으며, 수사준칙 제19조는 체포·구속영장의 신청에 착수한 때에는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하도록 하고 있음.

(나) 체포의 요건

1)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 특정의 범죄(범죄사실을 6하원칙에 의해 기재할 수 있을 정도)에 대한 혐의를 긍정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상태
- 구속영장 발부사유보다는 심증 정도가 약한 것이며, 소명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정도면 충분함.

2)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

- 1회 응하지 아니한 것만으로 바로 체포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되고 구체적 사건에 따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실무상 최소 3회 이상 출석요구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때 소재수사 후 체포영장을 신청
- 출석 불응의 우려가 있는 경우라 함은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또는 지명수배 중에 있는 경우 등을 말함.

- 출석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점은 출석요구서 사본 및 출석요구통지부 사본, 수사보고서 (피의자 출석불응)를 기록에 첨부하여 소명
 - ※ 전화로 출석요구한 경우에는 통화일시, 수화자, 수화자와 피의자의 관계, 피의자의 연락 가능성, 통화내용 등을 기재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함.

3) 경미사건인 경우

- 법정형이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체포의 사유 외에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는지를 검토

(4) 긴급체포(법 제200조의3)

(가) 긴급체포의 요건

1) 범죄의 중대성

-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 ※선고형이 아니라 법정형을 의미

2) 체포의 필요성

-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또는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어야 함.

3) 체포의 긴급성

-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긴급을 요하여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
-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는 사이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를 말함.

(나) 재체포의 제한

-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하고,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하지 못함(법 제200조의4 제2항, 제3항)
- 따라서 긴급체포를 하려고 할 경우에는 반드시 피의자가 동일한 범죄사실로 긴급 체포된

전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5) 현행범인의 체포(법 제211조~제213조의2)

(가) 현행범인의 의의

1) 현행범인

- 현행범인이란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직후인 자를 말함.(법 제211조제1항).
- 범죄의 실행 직후 여부는 범행과의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 범행 후의 경과, 범인의 거동, 휴대품, 범죄의 태양과 결과,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
- 범죄의 실행 직후인 자란 체포하는 자가 볼 때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시간과 장소로 보아 체포당하는 자를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고 볼 증거가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현행범으로 볼 수 있음.(대법원 94도3016)

2) 준현행범인

-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거가 있는 때,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법 제211조제2항)

3) 경미사건의 경우

-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음.(법 제214조)

나. 구속

(1) 구속의 의의

- 피의자에 대하여 판사가 발부한 영장으로 신체의 자유를 체포에 비하여 장기간 제한하는 대인적 강제처분으로 형사처벌의 진행 확보 목적임.
- 구속영장에는 구금영장(구인, 구금 모두 ○, 미체포 피의자용 사전구속영장과 체포된 피의자용 사후구속영장이 있음.)과 구인영장(구인 ○, 구금 ×, 미체포 피의자의 구속전 심문을 위한 구인용)이 있음.

(2) 구속의 절차

구속의 요건(법 제201조 및 제70조)

- 대상 : 피의자
- 구속 요건
 - ①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 ②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예외) 다액 5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사건 :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함
 - ※ (필요적 고려사항)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



구속영장의 청구

사후 구속영장 청구

- 법 제201조, 제201조의2, 규칙 제93조, 제95조의2, 제96조, 수사준칙 제60조
 - ①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체포한 때로부터 36시간 이내* 구속영장 신청 (검사)→48시간 이내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지방법원 판사)
 - * 영장처리시간표를 작성하여 영장기록에 부착하여 신청(「체포구속업무처리지침」)
- 신청방법
 - 피의자별로 신청
 - 제출서류 : 구속영장신청서(2부)(수사준칙 별지 제39호~제42호), 범죄사실 요지를 기재한 서면 1통(청구영장 수에 따라 각 1통) 체포영장·긴급체포서·현행범인체포서 또는 현행범인 인수서, 구속에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체포영장 청구보다 구체적인 증거 자료 제출)
 - 필요적 고려사항(법 제209조 및 제70조제2항)이 있는 경우 구속영장신청서에 기재

※ 구속영장청구서(신청서)의 기재사항(규칙 제95조의2)

1. 피의자의 성명(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주민등록번호 등, 직업, 주거
2.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그 성명
3. 죄명 및 범죄사실의 요지

- 4.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
- 5. 여러 통의 영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
- 6. 인치구금할 장소
- 7. 법 제70조제1항 각 호에 규정한 구속의 사유
- 8. 피의자의 체포여부 및 체포된 경우에는 그 형식
- 9. 체포의 통지(법 제200조의6, 법 제87조)에 의하여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체포이유 등을 알린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성명과 연락처

- 구속영장신청부(수사준칙 별지 제43호) 기재

사전 구속영장 청구

- 법 제201조, 제201조의2, 규칙 제93조, 제95조의2, 제96조, 수사준칙 제60조
 - ① 미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 ② **특별사법경찰관**의 구속영장 신청(검사) → 검사의 영장 청구(지방법원 판사)
- 신청방법 : 사후 구속영장과 동일하되, 체포된 피의자와 달리 체포영장·긴급체포서·현행 범인체포서 또는 현행범인 인수서나 영장처리시간표 제출 불필요



구속 전 피의자심문(판사)

구속전 피의자심문

- 법 제201조의2, 규칙 제96조의13~제96조의16
- 심문대상 : 구속영장이 청구된 (체포·미체포) 피의자
- 심문기한
 - 지체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영장 청구일의 다음날까지)
 - 구인영장으로 인치 시에는 24시간 이내
- 심문 참석 : 피의자, 검사, 변호인(변호인이 없는 경우 직권으로 국선변호인 선정), 신뢰 관계인
 - * 검사(특별사법경찰관)는 지정기일과 장소에 체포된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함.
- 피의자의 출석거부 시 :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출석거부보고(검사) → 검사는 피의자 출석거부통지(법원)
- 피의자 출석거부, 질병 등 사유로 출석이 곤란하고 심문법정에 인치할 수 없는 경우, 피의자 출석 없이 심문절차 진행 가능
- 심문의 비공개가 원칙
- 공범의 분리, 비밀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 발부

- 법 제201조의2, 규칙 제96조의11
-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 심문을 위해, 판사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구인영장) 발부 가능 → 인치 후 24시간 이내 구속영장(구금영장) 발부 여부 결정
- 발부사유 :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피의자 도망 등으로 심문 불가능인 때는 심문 없이 영장 발부 결정 가능 → 구인영장 집행(진술거부권 고지 등 영장 집행 방법, 구속의 통지, 접견 교통권 등에 있어 구속영장 집행에 준함.)

피의자심문 통지

- 법 제201조의2제3항, 규칙 제96조의12
- 통지시기 : 영장 청구 후 즉시 (구인영장으로 인치 시, 인치 후 즉시)
- 통지사항 : 심문기일과 장소
- 통지방법 : 서면, 구술, 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 문자전송 등
- 통지대상 : 피의자 및 변호인, 검사(검사 → 특별사법경찰관 통지)

구속영장의 발부 → 집행

- ① 구속영장 집행 (법 제209조, 제81조, 제83조, 제85조, 제86조, 제200조의5, 수사준칙 제54조)
 -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행,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검사의 지휘에 의해 교도관이 집행
 - 피의자에게 '구속영장 원본을 사전 제시' (교부×)
 -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며, 상대방의 신분증을 확인 (주민등록법 제26조)
 - **(고지사항)** ① 피의사실의 요지, ② 구속의 이유 ③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④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⑤ 진술거부권 및 ⑥ 구속적부심사 청구의 권리를 고지 → 피의자에게 '권리고지 확인서(지침 별지 제12호)' 를 징구하여 사건기록에 편철
 -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공소사실의 요지와 구속영장 발부사실을 고지하고 집행 → 집행완료 후 신속히 영장 제시
 - 영장에 기재된 장소로 호송(구속된 피의자의 호송 중 필요 시 가장 접근한 교도소나 구치소에 임시 유치 가능)
- ② 체포·구속영장 집행원부(수사준칙 별지 제29호) 기재
- ③ 체포·구속인명부(수사준칙 별지 제54호) 작성(수사준칙 제68조)

구속 시 압수·수색·검증(영장주의의 예외)

-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사전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이 가능(법 제216조, 제217조)
 - ① 영장 없이 피의자 수색(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
*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 있는 경우에 한함
 - ② 구속 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 압수물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으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 영장 청구, 발부받지 못한 경우 즉시 압수물을 반환해야 함.

구속영장의 발부 → 미집행

- 구속영장이 집행 불능이거나 불필요한 경우(ex. 피의자의 사망, 영장유효기간의 도과) →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영장반환 보고서(수사준칙 별지 제118호)에 영장을 첨부하여 영장을 청구한 검사에게 반환하고 그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수사준칙 제90조)

구속된 피의자의 권리보호 및 처우

- 구속의 통지(법 제200조의6, 제87조, 수사준칙 제61조)
 - 통지기한 : 지체없이(구속한 때부터 24시간 내)
 - 통지대상 : 피의자의 변호인/ 변호인이 없는 경우 피의자가 지정한 자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중)
 - 통지사항 : 피의사건명, 구속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
 - 통지방법 : 체포·구속 통지서(수사준칙 별지 제44호)
(긴급을 요하는 경우) 전화·모사전송 그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통지 후 →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 내 다시 서면통지
 - 통지서 사본은 수사기록에 편철(통지대상이 없어 통지하지 못한 경우는 그 취지를 수사보고서에 적어 수사기록에 편철)
- 구속 적부심사 청구의 통지(법 제214조의2, 수사준칙 제61조)
 - 통지기한 : 지체없이(구속한 때부터 24시간 내)
 - 통지대상 : 피의자 및 피의자가 지정한 자(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고용주 중)
 - 통지방법 : 체포·구속 통지서(수사준칙 별지 제44호)
* 구속의 통지와 달리 예외규정 없음.
 - 구속영장의 등본 교부 : 적부심사 청구권자의 교부요청에 따라 등본 교부 후 체포·구속영장등본교부대장(수사준칙 별지 제45호)을 작성 (규칙 제101조, 수사준칙 제62조)

- 변호인 선임의뢰 및 통지 : 구속된 피의자가 변호인 선임의뢰를 한 경우, 변호인 선임 의뢰의 통지(변호인 또는 가족 등) → 서면을 수사기록에 편철(법 제209조, 제90조, 지침 제44조)
- 변호인 및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수신 보장
 - 변호인(변호인이 되려는 자 포함), 그 밖의 사람(법원의 금지결정이 없는 경우)이 피의자와의 접견, 서류·물건의 수수, 의사에 의한 피의자 진료 요청 시 응해야 함. (법 제209조, 제89조, 제91조, 수사준칙 제63조, 제65조)
 - 체포·구속인 접견부·교통부·진료부(수사준칙 별지 제46호~제48호) 작성(수사준칙 제63조제4항)
 - 피의자 건강상태를 조사하여 구속으로 인해 현저하게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검사에게 보고(수사준칙 제66조)

구속 후 절차

- 법 제202조~제205조, 수사준칙 제67조
- 특수사법경찰관이 피의자 구속 시 피의자를 검사에게 **구속한 때부터 10일 이내** 인치해야 하고, 인치하지 않는 경우 석방해야 함.
 - 피의자를 인치받은 때부터 10일 이내 검사의 공소 제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석방해야 함.
- 피의자 석방(구금할 필요가 없거나 구속영장 기각) : 검사에게 석방지휘 건의* → 검사의 석방지휘에 따라 석방 → 검사에게 지체없이 석방 보고(수사준칙 별지 제37호) → 석방일시, 석방사유가 기재된 서면을 수사기록 편철
- * 석방지휘건의서(수사준칙 별지 제53호)로 하되 긴급한 경우 전화, 팩스, 전자우편, 그에 상당한 방법으로 가능
- 구속기간의 계산(법 제66조, 제203조의2, 제214조의2제13항)
 - 피의자를 체포(영장·긴급·현행범 체포)하거나 판사의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 발부로 구인한 경우,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초일 산입)’ 기산
 - 체포 후 사후구속영장 청구 시,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구속영장 청구서 등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 의 기간은 구속기간 미산입 (대검 형사1과-1551, 2008. 2. 4.)
 - 사전 구속영장 청구 시, ‘피의자심문을 위한 구인 시부터 법원으로부터 수사기록을 반환 받았을 때까지’ 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 (상동)

(3) 구속의 요건(법 제201조 및 제70조)

(가) 범죄 혐의의 상당성

- 범죄혐의는 객관적으로 범죄가 행하여졌다는 사실과 주관적으로 피의자가 그 범죄사실의 범인이라는 점을 포괄함.
- 구속영장발부 요건으로서의 범죄혐의는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 것이어야 하므로, 소송조건이 구비되지 않았거나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 등과 같이 범죄 성립조각사유가 명백할 때에는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없음.

(나) 구속 사유

1)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 일정한 주거는 실질적으로 고찰하되, 피의자가 성명, 주거를 묵비한 경우 실제로 일정한 주거가 있더라도 위 요건에 해당
- 피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실제 주거지와 동일한지 여부, 다른 경우 그 이유 및 동거인이 있는지 여부, 그 동거인과 연락 가능한지 등을 고려

2)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피의자가 구속되지 않으면 증거상황을 변경시킬 것이라는 점이 상당한 개연성의 정도로 인정될 수 있는 때
- 자백 여부 · 피의사건의 내용 · 범행의 태양 등과 함께 범죄의 성격에 따른 증거인멸 · 왜곡의 용이성, 사안의 경중, 증거의 수집 정도, 피의자의 성행, 지능과 환경, 물적증거의 존재 여부와 현재 상태, 공범의 존재 여부와 현재 상태, 사건관계인과 피의자와의 관계, 수사 협조 등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3)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 도망이란 피의자가 수사를 피할 의사로 주거를 이탈하는 상황을 말함.
- 사안의 경중,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전문적 · 영업적 범죄인지 여부, 피의자의 성행, 연령, 건강 및 가족관계, 피의자의 직업, 재산, 교육, 조직 · 지역사회 정착성, 사회적 환경, 주거의 형태 및 안정성, 국외 근거지의 존재 여부, 출국 행태 및 가능성, 수사 협조 등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자수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회복 및 합의 여부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다) 구속의 제한

-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에만 구속할 수 있음.

(4) 재체포 · 구속의 제한(법 제208조, 제214조의3)

- 아래의 경우에는 후술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 :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
 - *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란 구속수사 중 증거가 불충분하여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한 후 수사를 계속하여 다른 증거를 발견한 경우, 검사의 구속취소 결정 후 그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하였다가 그 후 새로운 증거를 발견한 경우 등
 - 체포 · 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 :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
 - 보석결정(법 제214조의2제5항)에 의하여 석방된 자
 - 도망한 때
 -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 · 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행위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간주함.

6. 압수, 수색, 검증(대물적 강제수사)

가. 압수 · 수색 · 검증의 의의

(1) 압수

- 압수란 '증거물' 또는 '몰수의 대상이 되는 물건' *의 점유를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강제 처분(법 제219조 및 제106조)

*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가 아니거나 범죄 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으로 ① 범행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② 범지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취득한 물건, ③ 전 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2) 수색

- 압수할 물건 또는 체포할 사람을 발견할 목적으로 주거, 물건, 사람의 신체 또는 기타

장소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처분(법 제219조 및 제109조) 수색은 실제로 압수와 함께 행하여지는 것이 통례이다.

(3) 검증

- 시각, 청각, 촉각, 미각, 촉각 등 오관의 작용에 의하여 물건, 인체 또는 장소의 존재, 형태, 성질, 형상 등을 실험, 관찰하여 인식하는 강제처분(법 제219조 및 제140조)

나. 압수 · 수색 · 검증의 절차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검증(법 제215조)

- 대상 : 피의자
- 영장의 요건
 - ① 압수 · 수색 · 검증의 필요성
 - ②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의 존재
 - ③ 압수 · 수색 · 검증 대상은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

영장주의의 예외

- ① 체포(영장 · 긴급 · 현행범 체포) · 구속 현장(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 포함)에서의 압수 · 수색 · 검증(법 제216조제1항제2호, 제2항)
 - 체포행위와 시간적 · 장소적 근접할 경우 체포前 · 체포실패 시에도 압수 · 수색가능
 - ※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 내 범죄의 체포인 경우에만 압수 · 수색 · 검증 가능
- ② 긴급체포된 피의자 소유 · 소지 · 보관 물건에 대해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을 때 압수 · 수색 · 검증(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함) (법 제217조제1항)
 - 긴급체포와 장소적 동일성을 요하지 않음.
 - ①, ② : 압수한 물건에 대해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후 압수 · 수색영장 '청구' (체포 · 구속한 때부터 48시간 이내), 영장 미발부 시 즉시 반환(법 제217조 제2항, 제3항)
- ③ 범행 중 ·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을 때의 압수 · 수색 · 검증 → 지체없이 사후영장 '발부받아야' 함. 영장 미발부 시 즉시 반환(법 제216조 제3항)
 - 체포 · 구속을 전제로 하지 않고 범행 중 ·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이면 족하고 범인이 현장에 있음을 요하지 않음.
- ④ 체포(영장,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 · 구속 시 피의자 수색(법 제216조제1항제1호)
 -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의 피의자 수색
 - ※ 영장체포 · 구속 시는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 한정

⑤ 임의제출물·유류물의 압수(법 제218조)

- 임의제출물 : 물건제출요청서(지침 별지 제15호) 발부 가능 → 임의제출서(지침 별지 제16호) 징구(지침 제48조)
- 유류물 압수 : 거주자, 관리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의 참여가 원칙이나 대상자가 참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 압수조서에 물건이 발견된 상황 등을 명확히 기록해야 함. (지침 제49조)
- ①, ③, ④(법 제216조)의 경우,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법 제123조제2항(책임자 참여의무), 법 제125조(야간집행의 제한)의 제한이 없음.(법 제220조)

(사전·사후) 영장의 청구

- 법 제215조, 규칙 제93조, 제107조~제109조, 수사준칙 제70조

① 특별사법경찰관의 영장 신청(검사)

- 제출서류 :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서(수사준칙 별지 제55호~제57호)(2부), 범죄 사실의 요지, 압수·수색·검증의 장소 및 대상을 따로 기재한 서면 1통(청구영장 수에 따라 각 1통) 및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압수·수색·검증의 필요 및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
- 압수·수색·검증의 범위는 범죄 혐의의 소명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해야 함.
- 수색·검증할 장소·신체·물건 및 압수할 물건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일반적, 탐색적 압수·수색 불허용)
- 피의자가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 수색을 위한 영장 청구 시에는 압수하여야 할 물건이 있다고 인정될만한 자료를 제출

※ 압수·수색·검증영장청구서(신청서)의 기재사항(규칙 제107조)

1. 피의자의 성명(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주민등록번호 등, 직업, 주거
2.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그 성명
3. 죄명 및 범죄사실의 요지
4.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
5. 여러 통의 영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
6. 압수할 물건, 수색 또는 검증할 장소, 신체나 물건
7. 압수, 수색, 검증의 사유
8. 일출 전 또는 일몰 후에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
9. 법 제216조제3항(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 범죄장소)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 검증을 한 일시 및 장소

10. 법 제217조제2항(긴급체포 후 24시간 이내, 체포현장)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에는 체포한 일시 및 장소와 영장 없이 압수, 수색, 검증을 한 일시 및 장소
11.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압수·수색하고자 할 경우 그 작성기간

-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부(수사준칙 별지 제58호) 작성
- ② 검사의 영장 청구(지방법원판사)
- ③ 지방법원판사의 영장 발부

영장의 집행

- 법 제219조, 제115조, 제118조, 수사준칙 제71조, 지침 제45조
-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집행
- 사법경찰관리가 압수·수색·검증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법경찰관리 참여의무(규칙 제110조)
- **사전 영장** 집행시 영장 원본을 '처분받는 자' 에게 제시(교부×)
 - 영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정한 사항이나 그와 일체를 이루는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영장을 제시
 -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검증이라는 사실과 범죄사실 및 수색이나 검증할 장소·신체·물건, 압수할 물건 등을 명확히 알리고 피압수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 영장을 제시하면서 표지에 해당하는 첫 페이지와 혐의사실이 기재된 부분만을 보여 주고 압수·수색·검증할 물건, 압수·수색·검증할 장소, 압수·수색·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 압수 대상 및 방법의 제한 등 필요적 기재 사항 및 그와 일체를 이루는 부분을 확인하지 못하게 한 것은 적법한 영장제시로 볼 수 없음.(대법원 2015도 12400)
 - 처분을 받는 자가 수인인 경우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
 - 변호인은 처분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영장제시대상이 아님.
 - 사후에 발부받은 영장은 처분을 받은 자에게 제시 불필요(대법원 2014도3263)
 - 체포·구속과 달리 긴급집행 후 사후제시는 불가능
 -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시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음(대법원 2014도10978)
- (중복집행의 제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을 종료한 경우에는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 불가(대법원 99모161)

야간 영장집행 금지

- 야간(일출 전, 일몰 후) 영장 집행 금지 : 야간에도 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영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야간집행 가능(법 제219조, 제125조, 제126조)
 - (예외) ① 도박 기타 풍속을 해하는 행위에 상용된다고 인정하는 장소
 - ② 여관, 음식점 등 야간에 공중이 출입 가능 장소(공개한 시간 내에 한해)
 - 주간에 집행 착수하였으나 야간까지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 집행 가능하나, 상황에 따라 피처분자를 대상으로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음.

영장집행 시 가능한 처분

- 영장 집행 시 가능한 처분(법 제219조, 제119조, 제120조, 제127조)
 - 집행 중 타인의 출입 금지, 위반자에 대한 퇴거(실력행사 가능), 집행종료 시까지 간수자(私人도 가능)를 붙이는 처분 가능
 - 영장집행을 중지한 경우, 집행종료 시까지 장소 폐쇄 또는 간수자를 둘 수 있음.
 - 잠금장치를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 가능
 - * '영장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필요한 처분' 을 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그 상황을 촬영하는 것은 위 필요한 처분' 에 해당(서울고등법원 2012노805)

참여권의 보장

- 참여권자 (법 제219조, 제121조~제124조)
 - ① 피의자와 변호인 : 집행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리 집행일시·장소를 통지해야 함.
 - (예외) 불참여의사를 명시한 경우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 (집행사실을 미리 알려주면 증거물을 은닉할 염려 등이 있어 압수수색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경우) 미통지
 - 실무상 수사기관에 의한 영장 집행은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통지하지 않고 행하는 것이 보통임. 현장에서 증거인멸 방지조치를 취한 후 통지 가능
 - ② 공무소, 군사용 항공기·선차 : 책임자에게 참여통지해야 함.
 - ③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박·차량 : 주거주, 간수자, 이에 준하는 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함. 참여 불능 시 인거인(人居人)이나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함.
 - ④ 여자의 신체에 대한 수색 :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함.



압수·수색·검증 후 절차

- 수색 후 절차
 - 수색조서(수사준칙 별지 제64호) 작성, 수색 결과 '압수할 물건' 이 없을 때에는 수색 결과증명서(수사준칙 별지 제65호)작성·교부(법 제219조, 제128조, 수사준칙 제76조제2항)
 - 수색대상자가 사람인 경우는 없더라도 증명서 교부 不要
- 압수 후 절차
 - ① 압수할 물건 발견 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작성(법 제219조, 제129조, 규칙 제109조, 제62조, 수사준칙 제74조)
 - 압수조서*(수사준칙 별지 제62호) : 압수의 일시·장소와 압수의 경위, 수색결과증명서·압수목록 교부 또는 압수물의 보관·폐기 처분에 관한 취지를 기재
 - *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검증조서, 실황조사서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하여 갈음 가능
 - 압수목록(수사준칙 별지 제63호) : 압수물건의 품종·수량 등을 구체적 기재해야 함.
 - ② 압수목록 교부서(지침 별지 제13호)에 따라 압수목록 교부(법 제219조, 제129조, 지침 제45조제8호)
 - 교부대상 : 소유자·소지자·보관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
 - 교부시기 : 현장에서 바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원칙
 - ③ 소유권 포기 시, 소유권 포기서(지침 별지 제14호) 징구(지침 제47조)
 - ④ 압수부(수사준칙 별지 제145호), 압수물 총목록(수사준칙 별지 제134호) 작성(수사준칙 제111조제4항, 제120조제2항)
- 검증 후 절차 : 검증조서(수사준칙 별지 제66호) 작성(수사준칙 제77조)



압수물의 보관 등

- 법 제218조의2, 제219조, 제130조~제132조, 제134조, 제135조, 수사준칙 제78조, 지침 제47조~제51조
- 사건명, 피의자의 성명, 압수목록에 적은 순위, 번호를 기입한 표찰을 붙여 보관
- 수사기관은 압수물 보관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
- 압수물의 처분
 - 검사 지휘건의(수사준칙 별지 제67호~69호, 제71호) 필요
 - 처분 전에 압수물에 대한 사진촬영 또는 사본하여 기록에 편철
- ① 압수물 환부·가환부*·피해자 환부 청구 → 승인 시 신속히 환부
 - * 가환부는 압수의 효력이 지속 → 가환부를 받은 자는 압수물의 보관의무가 있고 처분할 수 없으며, 수사기관 요구가 있으면 즉시 제출 의무가 있음(대법원 94모42)

-
- ※ 압수물 환부·가환부·피해자 환부 전에 미리 피해자,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 (피고인에 대한 통지 결정 없는 가환부 결정은 위법(대법원 80모3))
 - ② 압수물의 위탁보관 →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수물에 관하여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 → 압수물에 사건명, 피의자 성명, 압수목록에 기재한 순위·번호를 표시하고, 보관자로부터 압수물 보관 서약서(수사준칙 별지 제70호)를 받아 사건기록에 첨부
 - ③ 압수물 폐기 → 승인 시 재생 불가능한 방식 또는 별도의 법령에 정한 방식으로 폐기→ 폐기조서(수사준칙 별지 제72호) 작성 후 압수물 사진 및 폐기에 관한 증빙자료를 수사 기록에 첨부
 - 폐기대상
 - i)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
 - ii) 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폐기 동의(지침 별지 제17호 또는 진술조서에 취지 기재) 필요)
 - ④ 압수물의 대가보관 → 승인 시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하고 압수물 대가보관조서(지침 별지 제18호) 작성
 - 대가보관 대상 : 물수할 압수물이거나 환부를 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소재가 불명한 경우로서, 압수물의 멸실·파손·부패·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이 어려운 경우
 - ※ 대가보관 결정 전에 미리 피해자,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
 - ⑤ 압수물이 유가증권인 경우, 원형보존 또는 환전 보관 여부에 대해 검사의 지휘 건의
-

다. (사전)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검증

(1) 대상

- 피의자만 인정되므로 피내사자, 피고인은 영장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금융계좌추적용 영장, 통신영장은 내사단계에서도 신청할 수 있음.

(2) 영장의 요건

(가) 압수·수색·검증의 필요성

-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 라 함은 단순히 수사를 위하여 필요할 뿐 아니라 강제처분으로서 압수·수색·검증을 하지 않으면 수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 범죄의 형태, 경중, 대상물의 증거가치와 중요성, 인명의 염려, 처분을 받을 자의 불이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

(나) 범죄 혐의

-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 을 요구하므로 체포 구속 사유인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에 비하여 낮은 정도의 범죄혐의를 의미
- 수사개시에 필요한 정도의 초기단계의 혐의로 족하나, 주관적 추측에 불과한 것이 아닌 객관적 근거자료에 기초하여 인정되어야 함.

(다) 압수수색의 대상과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이 있어야 함.

라. 압수·수색의 제한

(1) 우체물 및 전기통신(법 제219조, 제107조)

- 우체물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에 관한 것으로서 체신관서, 그 밖의 관련기관 등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은 피의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압수 가능함.
- 압수의 대상이 되는 우체물 등은 개봉하지 않으면 내용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일 필요는 없음.
- 위의 처분을 하는 경우 수사에 방해가 될 염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발신인이나 수신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함.

(2) 군사상 비밀(법 제219조, 제110조)

-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서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수색 및 압수할 수 없으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할 수 없음.

(3) 공무상 비밀(법 제219조, 제111조)

-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 본인이나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당해 감독 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함. 단, 소속공무원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함.

(4) 업무상 비밀(법 제219조, 제112조)

-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음. 단, 그 타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함.

마. 전자정보의 압수·수색·검증

[디지털 증거 수집 관리 유의사항 (2014. 5. 대검찰청)]

1. 원칙적으로 전자정보 압수, 예외적으로 저장매체 압수

-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할 경우에는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으로 압수하고, 그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를 압수(법 제106조3항)

2.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및 원본과의 동일성 유지

가. 원본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하는 경우, 증거제출자의 동석 하에

- ① 압수물 확인서를 작성하여 확인·서명 받고,
- ② 압수물을 봉인하고 봉인에 대한 확인·서명을 받음



[압수 대상 저장매에 압수물 확인지와 봉인지 부착하면]

나. 사본을 만드는 경우

- 1) 원칙적으로 증거제출자의 동석 하에 원본 정보저장매체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 하거나⁹⁾ 또는 원본 전자정보를 ‘이미징’ 하는¹⁰⁾ 방식으로 복제하여 압수하고, ② 해쉬값¹¹⁾을 생성하고 확인·서명 을 받음
- 2) 부득이하게 파일을 복사하는 방법으로 압수할 경우에도, 증거제출자의 동석 하에 ① 컴퓨터, CCTV 등과 같은 원본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할 전자정보를 CD/DVD, USB, 외장하드 등 별도의 저장매체에 복사하고¹²⁾ ② 복사한 전자정보에 대한 해쉬값¹³⁾을 생성하여 ③ 생성한 해쉬값에 대하여 확인·서명을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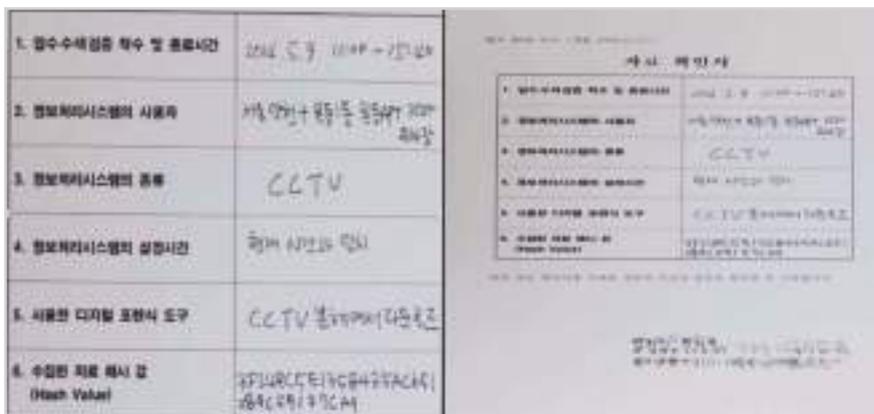
9) 정보저장매체에 있는 정보 전체를 압수하는 경우

10) 정보저장매체에 있는 정보 전체를 압수하는 경우

11) 해시알고리즘에 의해 생성된 32자리수의 16진수로 두 데이터간의 동일성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음. 원본 데이터의 1bit의 값이 변경되더라도 완전히 다른 해시값을 산출하므로 두 데이터간의 동일성 및 데이터의 변경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사용됨

12) CD/DVD에 전자정보를 저장할 경우에는 2개의 사본을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법정제출용(압수물 수리용)1개, 수사 참고용 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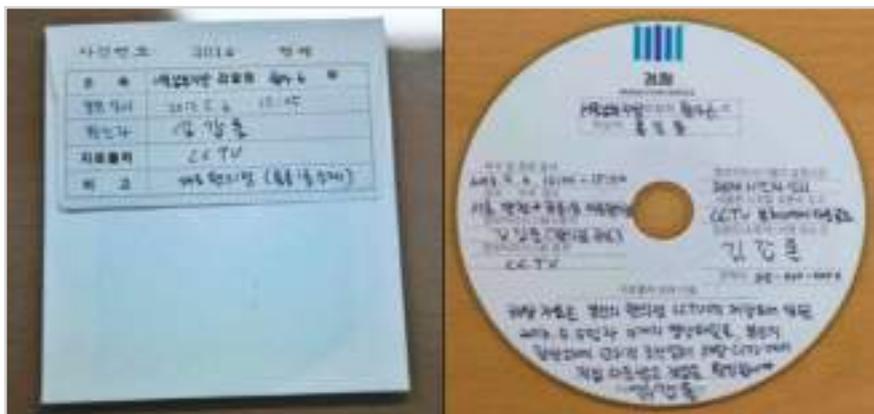
13) 해쉬값을 생성할 때에는 복사한 파일을 압축한 후 압축한 파일에 대하여 해쉬값을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압수한 전자정보의 해시값에 대한 확인·서명 확인]

다만, 해시값을 생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거제출자의 동석 하에

- ① 컴퓨터, CCTV 등과 같은 원본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할 전자정보를 복사하여 CD/DVD, USB 또는 외장하드에 저장한 후 봉인
- ② 봉인한 사본 정보저장매체에 대하여 확인·서명을 받음.¹⁴⁾



[압수한 전자정보를 CD/DVD에 저장하고 확인·서명·봉인한 화면]

- 자료출처 작성례 -

1. 해당 자료는 oo 편의점 CCTV에 저장되어 있던 2013.5.5일자 촬영된 5개의 동영상 파일로, 김갑돌의 참관 하에 인위적 조작 없이 해당 CCTV에서 직접 다운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14.5.15, 김갑돌
2. 해당 자료는 oo 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는 김갑돌의 업무용 PC의 C 드라이브 /바탕화면/Work폴더에 저장되어 있는 문서파일로, 김갑돌의 참관 하에 인위적 조작 없이 복사하여 저장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14.5.15, 김갑돌

14) 최근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25. 선고, 2013고합805 판결)에 의하면 '임의제출 받아 압수한 경우' 는 영상 집행에 비하여 간략한 절차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제출자로부터 원본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확인을 받은 후 원본을 압수하여야 하고, 복사 등을 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작성된 사본을 봉인하여 적어도 법원으로 하여금 그 무결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의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판시

3. 디지털 증거 취급 시 주의사항

가. CCTV 영상파일 압수의 경우

- CCTV 등의 화면을 휴대폰 등으로 재촬영하는 방법은 지양
 - 원본 관리자의 명확한 법정진술, 재촬영에 사용된 장비의 제출, 재촬영한 파일의 무결성 입증절차까지 필요하고, 화질 저하로 증거가치도 현저히 낮음.
- 동영상 파일변환 프로그램(다음팟 인코더 등)을 이용한 파일변환 금지
- 파일의 코덱정보, 파일구조에 변경이 생기고, 메타데이터가 사라지거나 새로 만들어져 기술적으로 원본과의 동일성 입증 곤란

나. 봉인 해제와 복사의 경우

- 수집된 디지털 증거의 봉인을 함부로 해제하거나 복사하여서는 안됨. 사후에 압수한 정보 저장매체의 봉인을 해제하거나 이를 재봉인할 때에는 증거제출자의 동석 하에 수행하거나, 봉인해제 등의 과정을 촬영함으로 디지털증거 보관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함.
- 반복 복사하면 각 단계 복사로 인한 동일성·무결성까지 입증해야 하므로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복사를 지양
- 사후 편집, 조작 주장에 대비하여 법정제출용 복사본을 따로 만들어 봉인이 된 상태로 법정 제출 시까지 유지할 필요 있음.

다. 디지털 증거 송치의 경우

- 디지털 증거가 압수물로 송치되지 않고 수사기록의 일부로 기록에 편철되어 올 경우 사후에 멸실되거나 증거 손상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디지털 증거 송치 시에는 가급적 압수물로 별도 송치할 필요 있음.

7. 금융거래 추적수사

가. 금융거래 추적수사의 의의

- 금융거래 추적수사란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를 조사하여 수사하는 기법으로, 금융거래정보는 범죄사건에서 혐의 유무를 밝히는 중요증거이자 범죄수익 환수의 기초 자료가 됨.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이라 함) 상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수사방법은 법원의 압수·수색·검증영장에 의한 강제수사와 명의인의 동의에 의한 임의수사로 나뉘어짐.

나.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

(1) 근거법령

-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제1호

(2) 영장의 신청

- 수사준칙 별지 제56호서식(금융계좌추적용)에 의하며, 영장의 신청방법 등은 일반 압수·수색·검증 영장 신청방식과 동일함.(수사준칙 제70조)

(3) 영장의 집행

- 사전에 변호인, 피의자에게 일시, 장소 통지(사전에 미참여의사를 명시하거나 급속을 요할 때는 예외)
- 영장의 집행 시에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책임자에게 ①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금융위원회고시)」 별지 제3호서식)와 ② 압수·수색영장 원본을 제시하여야 함.
- 특정점포(단위영업점포)에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영장에 의한 경우에는 거래정보 등을 보관·관리하는 부서 (ex. 본점 전산부 등)에도 요구가 가능 (금융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
-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은 요청사항과 회신내용이 확인되도록 금융거래정보요구서별로 작성하여 책임자(피압수자)에게 교부
- 압수목록은 금융기관 별로 교부하고 사본을 집행결과보고서와 함께 편철
- 과거 관행은 수사기관이 팩스를 이용하여 복수의 금융기관에 영장 사본을 전송하여 자료 제공요청을 하고 수사기관의 압수조서나 압수목록 작성 없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이메일이나 팩스를 이용하여 금융거래자료를 송부받았으나, 이에 대해 증거능력 부정(대법원 2018도 2841)

(4)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의 통보 및 통보유예 요청

- 금융기관은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 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명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금융실명법

제4조의2제1항)

- 수사기관은 서면*으로 통보 유예 요청을 할 수 있음.

*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서식에 포함

- 통보 유예 사유(금융실명법 제4조의2제2항)

- ① 통보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② 통보가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 ③ 통보가 질문·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 통보 유예 기간

-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하되, ②, ③의 사유인 경우에는 유예요청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6개월 동안 통보 유예 가능

- 통보유예사유가 지속되고 있고 통보유예를 서면으로 반복 요청한 경우, 매1회 3개월 범위에서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 유예 가능(②, ③의 사유인 경우는 두 차례만 유예 가능)

- 명의인 통보비용은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가 부담(금융실명법 제4조의2제4항)

다. 명의인의 동의에 의한 금융거래정보 제공

(1) 근거법령

-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

(2) 제공절차

- 동의자로부터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 동의서' 징구(금융실명법 시행령 제8조제1항)하고, 동의서 뒤에 동의자 신분증 사본 첨부

-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 동의서의 기재사항 -

1. 거래정보등을 제공받을 자
2. 거래정보등을 제공할 금융회사등
3. 제공할 거래정보등의 내용 및 범위
4. 거래정보등의 제공 목적
5.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7. 동의서의 작성연월일
8. 동의서의 유효기간

- 수사관은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를 작성하고 수사관 신분증 사본 첨부
- 금융회사에 팩스, 우편, 방문을 통해 위의 서류를 제출하고 금융거래정보 취득
- 금융회사는 동의서를 제출받는 경우 명의인의 자필서명 또는 무인을 통해 명의인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기재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의심스러운 경우 명의인에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금융실명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제3항)

8.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수사

가. 통신수사의 의의

-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자료 제공,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통신제한조치(우편물 검열, 전기통신 감청) 등을 통해 피내사자 또는 피의자의 통신내용, 통신사실, 가입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정황증거로 활용하거나 수사의 구체화를 행하는 수사방법

전기통신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신고가 면제된 경우를 포함)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

- * 기간통신사업자: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여 기간통신역무(전송역무,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등록대상) ex) KT, SKT, LGU+, 인터넷 전화업체, 각종 폰팅업체, 구내통신업체
- * 부가통신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를 임차하여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신고대상) ex) 다음, 네이버, 카드사 등

나. 통신수사의 종류 및 절차

(1) 통신자료 제공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
제공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특별사법경찰관의 자료제공요청(전기통신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원,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4급 이상 공무원, 5급 공무원이 수사관서의 장인 경우는 5급 공무원을 포함)의 공문서 (동법 시행령 제53조제5항, 제6항) - (원칙) 자료제공요청서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

제공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외)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른 방법으로 요청 가능, 사유 해소 시 지체없이 자료제공요청서를 제출 - 자료제공요청서에 결재권자의 직급 및 성명을 명확하게 기재 (동법 시행령 제53조제6항) <p>② 전기통신사업자의 자료제공</p>
------	---

제공정보	<p>① 이용자의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전화번호 ⑤ 아이디 ⑥ 가입일 또는 해지일</p> <p>ex) 수사대상자의 휴대폰 전화번호 확인, 전화번호의 명의자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 관련 통신사업자(ex. KT, SKT)의 통신자료 취득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털 3사(다음, 네이버, 네이버온)와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의 법원의 영장이 없는 경우 통신자료제공 요청에 불응 ※ 전화 관련 통신자료라도 6개월 이전 해지된 통신자료는 취득불가 (압수수색영장에 의해서 취득)
------	--

(2)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근거법령	<p>「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3조의3, 제6조,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37조, 수사준칙 제85조 ~제88조</p>
제공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허가(원칙)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수사준칙 별지 제104호)(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피의자별 또는 피내사자별로 신청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부(수사준칙 별지 제105호) 작성 ② 검사의 허가청구(법원) ③ 법원의 허가 ④ 특별사법경찰관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수사준칙 별지 제98호)(전기통신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서와 함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서 사본,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모사전송 또는 방문하여 집행(신분증과 허가서 원본 제시)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대장(수사준칙 별지 제99호)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조서(수사준칙 별지 제100호) 작성 - 자료제공이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중지통지(수사준칙 별지 제102호) ⑤ 전기통신사업자의 자료제공

제공절차

-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수사준칙 별지 제101호) 작성
- ⑥ 사건종결 시 검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결과보고서(수사준칙 별지 제103호)), 다른 관서에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사건을 이송받아 내사 종결한 경우 허가서를 청구한 검사에게 집행결과 보고 후 허가를 신청한 관서에 사건 처리결과 통보
- ⑦ 사건송치 시 '부전지' *를 사건기록 하단에 부착
 - * 「통신비밀보호법 통지·통보 업무처리지침」(대검찰청 예규) 별지 제1호서식
- 사후허가(사전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
 - ①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수사준칙 별지 제106호) 및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대장(수사준칙 별지 제107호) 작성
 - ② 지체없이 검사에게 허가 신청(수사준칙 별지 제108호)
 - ③ 검사의 허가 청구
 - ④ 법원의 허가
 - ⑤ 허가서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
 - 사후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공받은 자료를 폐기
 - * 기타 절차는 사전허가와 동일

제공정보

-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 ①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보존기간 12개월, 시내·시외 전화역무 관련자료 6개월)
 - ② 전기통신개시·종료시간(12개월)
 - ③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12개월)
 - ④ 사용도수(12개월)
 - ⑤ 컴퓨터통신·인터넷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통신·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3개월)
 - ⑥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전기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12개월)
 - ⑦ 컴퓨터통신·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3개월)
 - ex) 휴대폰의 특정기간 발신·역발신 내역 확인, 수사대상자 사용 휴대폰으로 위치 추적 확인, 인터넷뱅킹 접속 IP, 텔레뱅킹 접속 전화번호 확인
- ※ 전화 문자메세지는 별도 보관하지 않으므로 취득불가(휴대폰 압수를 통한 정보 취득)

제공요건

- 수사의 필요성(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 피의자 검거를 위한 휴대전화의 실시간 위치추적이나 컴퓨터망의 실시간 접속추적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을 정도의 필요성 요구 → 피의자 검거를 위한 위치추적 목적으로 통신사실 확인자료 허가신청을 할 경우에는 체포영장과 함께 청구
 - 그 밖의 수사를 위한 자료제공요청 : 성격이 압수에 가까우므로 압수·수색영장 청구요건과 비슷한 정도의 수사상 필요성이 필요
- 보충성
 - 수사를 위하여 1) 취득정보 ⑥, ⑦ 중 실시간 위치정보 추적자료와 2) 특정한 기지국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범인의 발견·확보 또는 증거의 수집·보전이 어려운 경우' 에만 자료 요구가 가능함.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제1항의 범죄 또는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인 경우' 에 제공요청 가능
- 수사의 필요성(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 피의자 검거를 위한 휴대전화의 실시간 위치추적이나 컴퓨터망의 실시간 접속추적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을 정도의 필요성 요구 → 피의자 검거를 위한 위치추적 목적으로 통신사실 확인자료 허가신청을 할 경우에는 체포영장과 함께 청구
 - 그 밖의 수사를 위한 자료제공요청 : 성격이 압수에 가까우므로 압수·수색영장 청구요건과 비슷한 정도의 수사상 필요성이 필요
- 보충성
 - 수사를 위하여 1) 취득정보 ⑥, ⑦ 중 실시간 위치정보 추적자료와 2) 특정한 기지국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범인의 발견·확보 또는 증거의 수집·보전이 어려운 경우' 에만 자료 요구가 가능함.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제1항의 범죄 또는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인 경우' 에 제공요청 가능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관련 통지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 통지대상 : 가입자
 - 통지방법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서(서면 통지) (수사준칙 별지 제109호)
 - 통지기간
 - ① 기소처분, 불기소처분, 불입건 처분(기소종지, 참고인종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관련 통지

- 결정 제외) : 검사로부터 기소·불기소처분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불입건처분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② 기소중지결정, 참고인중지결정 : 결정을 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부터 30일
- ③ 수사 진행 중 : 자료제공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부터 30일
- 통지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부(수사준칙 별지 제110호) 작성
- 미통지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통신비밀 보호법 제17조제2항제3호)
- 통지의 유예
 - 유예대상 : 기소중지·참고인중지결정, 수사 진행 중인 경우의 통지
 - 절차
 - ①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서(수사준칙 별지 제111호)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지방 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② 통지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수사준칙 별지 제112호) 작성
 - ③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 통지의무
 - ④ 유예사유가 해소되어 통지를 한 경우,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 보고서(수사준칙 별지 제113호)에 따라 검사장에게 보고
 - 유예사유
 - ① 국가의 안전보장,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② 피해자,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증거인멸, 도주,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④ 피의자,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사유의 통지
 - 통지신청 : 자료제공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 (서면신청)
 - 통지방법 :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서면 통지

(3)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근거법령	법 제215조,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 규칙 제107조, 수사준칙 제83조
제공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법원 판사의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집행 (영장 신청 및 집행 등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처리) - 전기통신의 수·발신기간이 영장에 명시되어야 함.
제공자 및 제공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자 : 전기통신사업자 ※ 전기통신사업자가 아닌 자(학교,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압수·수색·검증영장에 의하되, 「통신비밀보호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제9조의3의 통지 불필요 • 제공정보 :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이메일 등) ex) 수사대상자가 이미 송수신한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내용 확인, 휴대폰 번호의 해지내역 확인, 수사대상자의 아이디 확인, 범죄 발생 당시 그 곳에서 통화한 번호 확인
압수·수색·검증 집행사실 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지대상 : 가입자 • 통지방법 :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실 통지서(서면통지)(수사준칙 별지 제94호) • 통지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로부터 기소·불기소처분(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증지 제외)의 통보를 받은 경우 - 내사사건에 관하여 불입건처분을 한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보일·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 •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실 통지부(수사준칙 별지 제95호) 작성 ※ 통지유예나 미통지에 대한 벌칙규정 없음.

(4) 통신제한조치

-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 대상 범죄는 제한조치 대상이 아님.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제1항)

9. 수사결과 보고

가. 의의

-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종결하고자 할 경우에 피의자 인적사항, 전과 관계, 피의사실 요지, 사실 및 증거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보고서

나. 검토사항

- 수사가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등 제반 규정에 따라 진행되었는가.
- 수사 흐름상 전체적으로 모순점은 없는가, 모순점에 대하여 충분히 사실을 확인하였는가.
- 수사가 미진하여 더 조사하여야 할 사항은 없는가.
- ※ 피의자가 피의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 참고인 조사 또는 객관적인 자료 입수 등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확보되었는가.
- 기록에 미비한 점은 없는가, 송치의견과 다른 반대 자료가 없는가.
- 각종 조서, 수사보고서 등에 작성 연월일이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는가, 작성자와 진술자의 서명, 날인 및 간인 등의 누락은 없는가, 문자의 첨부은 규정대로 되어 있는가.
- ※ 제출된 증거자료는 누가 제출한 것인지 특정되어야 하므로 수사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인, 제출경위, 제출목적 등을 명확히 표시하였는가.
- 각종 조서의 내용이 조사 목적에 충실하게 작성되었는가, 조서의 내용에 모순점은 없는가.

④ 수사의 종결

수사를 실행하여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고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였거나, 더이상 수사를 계속 하여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즉 공소제기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만큼 진상이 규명되었다고 판단되면 수사를 종결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

1. 사건송치 절차 (수사준칙 제109조)

가.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 소속기관의 장에게 수사결과를 보고하고,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하여야 함.

나. 사건을 송치할 때는 소속관서의 장인 특별사법경찰관 명의로 하여야 함.

- 다만 소속관서의 장이 특별사법경찰관이 아닌 때에는 특별사법경찰관인 수사주무과장 명의로, 주무과장이 특별사법경찰관이 아닌 때에는 수사담당 특별사법경찰관 명의로 하여야 함.

다. 송치 전에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경우(수사준칙 제110조)

-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사건
 - 검사의 입건 지휘(수사준칙 제35조)를 받은 사건
 - 사건관계인의 이익제기 등의 사유로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 수사의 투명성을 위해 사건을 송치하기 전에 지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 사건을 송치한 후 검사의 보완수사 지휘에 따라 지휘내용을 이행한 사건
 - 검사가 접수하여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수사할 것을 지휘한 사건
 - 그 밖에 사회적 중요성이나 사건을 통일적으로 처리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지정하는 사건
 - 「출입국관리법」 위반범죄, 「관세법」 위반범죄 및 「조세범 처벌법」 위반범죄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고발을 공소제기 요건으로 하는 범죄(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할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

을 할 수 있음.)

- 특별사법경찰관의 지휘 건의가 있는 경우, 검사는 7일 이내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안이 복잡하거나 장시간의 검토를 필요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 의견 제시 가능
- 검사의 지휘를 받은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송치서의 비고란에 지휘검사의 성명 및 지휘일자를 기재하고, 수사기록에 수사지휘서 또는 지휘내용을 기재한 수사보고서를 편철해야 함.

2. 송치서류

가. 사건을 송치할 때의 구비서류와 편철순서(수사준칙 제111조)

- 사건송치서 : 별지 제133호 서식
- 압수물 총목록 : 별지 제134호 서식
- 기록 목록 : 별지 제135호 서식
- 의견서(간이서식) : 별지 제136호 서식
- 범죄인지서 : 별지 제3호 서식
 - ※ 고소, 고발사건의 경우 범죄인지서 대신 고소, 고발장 편철
-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서, 진술조서, 압수조서, 수사보고서, 범죄경력조회(지문조회)통보서, 수사자료표, 범죄통계원표 등 필요 서류
 - ※ 범죄인지서 다음부터는 작성일자 순으로 편철
 - ※ 송치 후에 범죄경력을 발견하였거나 기타의 회보를 받았을 때에는 추송서를 작성하여 즉시 추송

나. 유의사항

- 기록에 편철하는 서류는 반드시 그 출처 등 근거를 명백히 하여야 함.
- 계약서, 영수증 원본 등 당사자 사이에 민사상 중요한 자료는 이를 사본으로 기록에 편철하고, 원본은 당사자에게 보관토록 함.
 - ※ 모든 사본은 원본과 대조 확인(대조 연월일, 확인자 서명, 날인)
- 압수물 총목록, 기록 목록, 의견서는 송치명일자 도장으로 간인하고 사건송치서부터 의견서까지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입(1장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1로 표시, 2장 이상인 경우에는

1-1, 1-2, 1-3 등으로 표시)

- 나머지 서류는 접수 및 작성일자 순으로 편철하고 각 장마다 2부터 시작하여 2, 3, 4 등으로 면수 표시
- 영상녹화를 실시한 경우에는 봉인된 영상녹화물을 함께 송부하며, 송치서 표지 비고란에 영상녹화물의 종류와 개수를 표시(수사준칙 제112조)
- 압수물 총목록 기재는 압수일자 순으로 기재하고 압수조서의 기재내용과 같이 기재
- 수사 중 압수물 환부 시 압수물 총목록에 환부, 가환부 표시를 함.
- 사건당사자로부터 서류를 제출 받을 때 진술서에 어떤 내용을 왜 제출하는지 설명하도록 요구하거나 수사보고서에 서류를 제출받은 경위, 서류내용을 기재하고 필요하면 목록을 첨부
- 주의해야 할 점은 제출된 서류에 수사관이 직접 오탈자 수정을 하거나 부기설명을 하면 안 되며, 이는 나중에 당사자로부터 위변조 등 오해를 부를 수 있음.

3. 수사결과와 통지

- 수사관은 수사의 진행상황을 사건관계인에게 적절히 통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수사준칙 제9조)
- 수사결과 통지의 의무(지침 제79조)
 - 통지시기 : 수사를 종결하고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
 - 통지대상 : 피의자와 고소인 · 고발인 · 피해자(피해자 사망 시는 배우자 · 직계친족 · 형제 자매 포함) 또는 법정대리인
 - ※ 통지 대상자의 연락처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알게 된 때에 통지
 - ※ 기소중지의견으로 송치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통지하지 않음.
 - 통지방법 : 통지 대상자가 요청한 방법 (ex. 전화, 문자메시지, 팩스, 전자우편 등)이 우선, 그 외는 수사결과 통지서(지침 별지 제27호) 또는 문자메시지

03

각종 수사서류 작성요령

03. 각종 수사서류 작성요령

수사를 종결할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수사준칙 제 109조제1항) 송치서류는 ‘사건송치서 → 압수물 총목록 → 기록목록 → 의견서 → 그 밖의 서류’의 순을 편철한다. (수사준칙 제111조제4항)

① 사건송치서

1. 상황

- 수사를 종결하면 수사서류를 갖추고 기록 앞에 사건송치서를 붙여 검찰로 송치

2. 작성요령

가. 작성예시

부산지방 검찰청	사건과장	20 . . . 수리	주임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
		형 제 호				
부산광역시						
제 2019 - 12 호(송치번호)			2019. 3. 18.(송치일자)			
수 신 :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제 목 : 사건송치						
다음 사건을 송치합니다.						
	피 의 자	지문원지 작성번호	구속영장 청구번호	피의자 원표번호	통신사실 청구번호	
구속	1. 가. 나. 다. 김갑을(金甲乙)	2019-000014	2019-25	2019-030003	2019-33	
불구속	2. 가. 나. 이병정(李丙丁)	2019-000014		2019-030004		
수감중	3. 가. 다. 박무기(朴戊己)	2019-000016		2019-030005		
미체포	4. 가. 다. 최경신(崔庚申) 여			2019-030006		
죄 명	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나. 식품위생법위반 다. 공중위생법위반					
발각원인	인지 / 고소 / 고발 / 고소(취소) / 고발(취소)			수리 전산입력		
사건번호	2019-9 (2019. 2. 25. 접수)			(검찰청 전산실에서 입력)		
체포구속	2. 2019. 3. 7. 체포영장 (1. 2019. 3. 9. 구속)					
석 방	2. 2019. 3. 9. 검사 석방 지휘					
의 견	1.의 가, 나 기소, 1의 다 불기소(공소권없음) 2.의 가, 나 기소 3.의 가 기소, 3의 다 불기소(공소권없음) 4. 각 불기소(협의없음)					
증 거 품	있음(송치) / 있음(가환부) / 있음(보관) / 있음(폐기) ... / 없음					
비 고	박△△검사, 2019. 3. 2. 지휘사건임					
부산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						
특별사법경찰관 지방서기관 △ △ △ (인)						

나. 항목별 작성요령

(1) 피의자

- 피의자 표시 맨 앞에 ‘구속·불구속·미체포’ 등 신병관계 표시하고 여자일 경우 성명 뒤에 ‘여’ 라고 기재
 - 피의자가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체격·지문 기타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
- 2명 이상인 경우 「1, 2」번호를 부여하고 번호 다음에 「가, 나」로 죄명 부호 표시 (법정형이 중한 순서대로 기재)
- 피의자가 다수로 해당란에 모두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 범죄행위가 중한 대표자 1명만 기재하고 “붙임 명단” 사용

구속 1. 가. 나. 다. 김갑을(金甲乙)
외 10명(명단 붙임)

- 양벌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행위자를 먼저 기재하고 법인 기재 및 괄호 안에 대표자 성명 기재

구속 1. 가. 나. 다. 김갑을(金甲乙)
2. 가. 주식회사 대박전자
(대표이사 김갑을)

(2) 지문원지 작성번호, 구속영장 청구번호, 피의자원료번호, 통신사실 청구번호

- 지문원지 작성번호 : 수사자료표의 작성번호(해당기관 연도별 일련번호)
- 구속영장 청구번호 : ‘검사’ 의 ‘영장청구번호’ (사법경찰관의 영장신청번호나 법원의 영장번호 아님)
- 피의자원료번호 : 범죄사건부 하단의 ‘피의자표’ 의 번호
- 통신사실 청구번호 : ‘검사’ 의 ‘청구번호’

(3) 죄 명

- ‘식품위생법위반’ 등 ‘~법위반’ 으로 기재하며 띄워쓰기 하지 않음.
- 죄명은 대검찰청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에 따름.
- 수개의 범죄사실 각각에 해당하는 죄명이 있을 때, 각 죄명 앞에 가. 나. 다. 순으로 번호

를 붙이고 죄명 상호간의 기재순서는 법정형이 무거운 순서에 의하고 법정형이 동일한 경우에는 범죄사실의 시간적 순서에 의함.

(4) 발각원인, 사건번호, 체포구속, 석방, 수리전산입력

- 발각원인 : 인지·고소·고발·자수·고소취소·고발취소로 구분하여 기재
- 사건번호 : 범죄사건부의 사건번호를 기재하며 괄호 안에 접수일자 기재
- 체포구속 : 체포인 경우 '체포일자' (영장발부일자 아님) 및 '체포의 종류(체포영장, 긴급 체포, 현행범인 체포)' 를 기재함. 구속의 경우 '구속일자' (영장발부일자 아님)와 '구속' 이라고 기재함. 피의자가 여러명인 경우 해당 피의자의 연번을 기재한 다음 위의 사항을 작성 ex) 1. 2. 2015. 3. 7. 체포영장(1. 2015. 3. 9. 구속)
- 석방 : 석방일자 및 석방사유(검사 석방지휘, 체포·구속적부심, 판사 구속영장 기각 등)을 기재

(5) 의견

- 사법경찰관의 송치의견 기재 : “기소”, “불기소(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중 1)”, “기소중지(지명수배, 지명통보)”, 참고인 중지 중 하나
- 피의자 또는 죄명이 2 이상일 때에는 ‘피의자(아라비아 숫자) → 죄명(가, 나, 다....) → 의견’ 순으로 기재
- 사람별로 기소, 불기소 의견을 기재함이 원칙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일부 기소, 일부 불기소 의견인 경우에는 죄명부호별로 의견 표시 ex) 1.의 가, 나 기소, 1의 다 불기소(공소권없음) / 2. 각 불기소(혐의없음)

(6) 증거품

- 증거품이 있는 경우 “있음”, 없는 경우 “없음” 으로 기재
- “있음” 의 경우에는 괄호를 하여 증거품의 상태(송치, 환부, 가환부, 보관, 폐기, 인계, 환가 등)을 기재 ex) 있음(송치), 있음(가환부), 있음(통신제한조치)

(7) 비교

- 검사 수사지휘 사건인 경우 ex) “○○○검사 수사지휘사건, 2015. 2. 1.” 로 표기
- 지명수배해제 및 기타 지문조회 사항 등 중요 내용 기재 ex) 지명수배입력 필
- 영상녹화 실시 시 영상녹화물의 종류와 개수 표시 ex) 영상녹화물 CD 1매

(8) 송치인 명의

-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소속관서의 장인 특별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관서의 장이 특별사법경찰관이 아닌 때에는 수사주무과장인 특별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하고, 주무과장이 특별사법경찰관이 아닌 때에는 수사를 담당한 특별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 송치명의인의 私印 날인(기관장 직인 불필요)

② 압수물 총목록

1. 상황

- 수사기록 중간 중간에 편철되어 있는 압수목록을 한 곳으로 모아 놓은 것
- 현장이나 조사실에서 임의제출을 받거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증거물을 압수하게 되면 그때그때 압수조서, 압수목록을 작성하여 작성일자 순으로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 조사를 마무리하게 되면 사건송치서 바로 뒤에 편철하는 압수물 총목록에 위 압수목록을 일련번호로 기재, 작성한다. (압수물이 없을 경우에는 압수물 총목록은 작성할 필요가 없다.)

2. 작성요령

가. 작성예시(수사준칙 별지 제134호서식)

압수물총목록				
번호	품종	수량	기록정수	비고
1	하드디스크	35	15	송치
2	복제 시디(CD)	123	15	송치
3	일천 원권 지폐	2	25	가환부
4	일만 원권 지폐	2	25	가환부

나. 작성방법

- 번호 : 압수목록의 번호를 이어서 일련번호로 기재
- 품종, 수량 : 압수목록에 있는 품종 그대로 기재
- 기록정수 : 압수목록이 있는 페이지를 기재
- 비고 : 송치, 환부, 가환부 등을 기재

③ 기록 목록

1. 상황

-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한다.(법 제198조 제3항)

2. 기록 편철과 기록 목록

- 의견서 : 1장인 경우 1로 표시, 2장 이상인 경우 1-1, 1-2 등으로 표시
- 기타 수사서류 : 각 장마다 면수를 표시하되 2부터 시작하여 순서대로 표시
- 수사개시자료인 고소(고발)장이나 범죄인지서를 송치관련 서류(사건송치서 → 압수물 총목록 → 기록목록 → 의견서) 바로 뒤에 편철한다. 나머지 수사서류는 접수 및 작성순서에 의해 편철한다.

3. 작성요령

가. 작성예시(수사준칙 별지 제135호서식)

기록목록			
서류표목	진술자	작성연월일	정수
의견서	담당자	2015. 1. 3.	1-1
고발서	부산광역시청	2014. 11. 25.	2
- 적발경위서			3
- 확인서			5
- 거래명세표 사본			7
- 현장 사진			9
출석요구통지부	담당자		14
참고인 진술조서(고발인)	김고발	2014. 11. 27.	15
-수사과정 확인서			19
출석요구서 사본(피의자)		2014. 11. 29.	20
수사보고(피의자 출석불응)	담당자	2014. 12. 3.	21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담당자	2014. 12. 4.	22
출석요구서 사본(피의자, 2차)	담당자	2014. 12. 5.	25
피의자신문조서	홍길동	2014. 12. 9.	26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확인서			27
-수사과정확인서			31
-주민등록증 사본			32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담당자	2014. 12. 10.	33
- 사업자등록증 사본	▽▽▽물산		34
수사결과보고서	담당자	2014. 12. 14.	35
범죄, 수사경력조회서, 주민조회서	홍길동	2014. 12. 8.	38
이하여백			

나. 작성방법

- 목록 서식의 「진술자」란에는 진술자 또는 작성자를 기재
- 참고인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작성자가 아닌 ‘피조사자’를 기재
- 수사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및 의견서에는 ‘작성자’를 기재
- 범죄경력조회서는 누구 조회했는지가 아니라 누구에 대한 조회인지가 중요하므로 그 ‘조회 대상자’를 기재
- 진술자란에 누구를 기재해야 할지 판단하기 곤란할 때에는 제3자(결재권자, 검사, 판사 등)가 그 수사기록 목록을 보고 어떤 내용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기재
- 「작성연월일」란에는 서류를 작성한 일자 또는 접수한 일자를 기재.
- 각종 조서 및 수사보고서 등에 첨부서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아래에 소제목을 기재

④ 의견서

1. 상황

-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피의자의 인적사항, 죄명, 적용법조, 범죄경력, 범죄사실, 수사결과 및 처분의견 등을 기재한 종합보고서(수사준칙 제113조)

2. 의견서의 종류

가. 정식의견서

- 공판절차에 의한 심판을 구하는 공판청구용 의견서 즉, 정식재판청구용 의견서이며, ① 구속사건 ②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는 등 범죄혐의가 중한 불구속사건 ③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사안이 복잡하여 증거판단을 요하는 사건 ④ 불기소 의견인 사건(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각하, 기소중지 등) 등에 활용한다.

나. 간이의견서(수사준칙 별지 제136호서식)

-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을 토대로 벌금·과료 또는 몰수의 형을 과하는 절차에 사용하는 의견서로서, ① 법정형에 벌금형이 있는 등 범죄혐의가 비교적 경미한 불구속사건 ②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거나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사안이 간단하여 증거판단을 요하지 않는 사건 등에 활용한다.

3. 작성요령

가. 정식의견서 작성예시

의견서

I. 피의자 인적사항

1. ○○○(한자 성명), 위탁급식업

주민등록번호 : 680110-1000000 (만 00세)

주거 : 부산광역시 ○○구 ○○로, ○○아파트 ○○○ 동 ○○○호
010-0000-0000 , 051-000-0000

등록기준지 : 부산광역시 ○○○구 ○○○로 ○○

2. 주식회사 △△푸드 (000000-0000000, 대표이사 ○○○)

소재지 : 부산광역시 ○○구 ○○로 ○○, 051- 000-0000

II. 전과 및 검찰처분관계

각 해당없음

III. 범죄사실

1. 피의자 ○○○

피의자는 부산광역시 ○○구 ○○로 ○○에서 주식회사 △△푸드라는 상호로 위탁급식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직업 등 의무의 근거)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5. 3. 2.부터 2015. 9. 2.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구 ○○로 ○○에 있는 □□식품으로부터 중국산 배추김치를 총 10회

에 걸쳐 400kg, 700,000원 상당을 구입한 후 위탁급식소 내 메뉴판에는 국내산 배추김치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회사 직원들에게 식사 1인분에 4,000원씩을 받고 1일 평균 100여명에게 급식용 반찬으로 제공하였다. (위반내용)

이로써 피의자는 중국산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를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하여 판매·제공하였다. (결어)

2. 피의자 주식회사 △△푸드

피의자는 위탁급식소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직업 등 의무의 근거 - 법인의 설립목적)

피의자는 피의자의 대표이사인 ○○○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의자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중국산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를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하여 판매·제공하였다. (위반내용)

IV. 죄명 및 적용법조

1. 피의자 ○○○

농수산물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5조, 제6조제2항 제1호

2. 피의자 주식회사 △△푸드

농수산물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7조, 제15조, 제6조제2항 제1호

V. 수사결과 및 의견

1. 피의자 ○○○

- 피의자는 중국산배추김치가 값이 싸기 때문에 중국산 배추김치를 구입한 후 ■■회사 직원들에게 국내산인 것처럼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 제공하였다고 범행을 자백하고(기록 제00쪽)
-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인 것처럼 하여 ■■회사 직원들에게 제공하였다는 종업원 ☆☆☆의 진술(기록 제00쪽), 중국산으로 표시되어 있는 피의자의 회사에서 압수한 배추김치 포장지에 부착된 전단지 내용(기록 제00쪽) 등 증거자

료가 충분하여

- 범죄혐의가 인정되므로 기소의견임.

2. 피의자 주식회사 △△푸드

- 피의자의 대표이사인 ○○○가 위와 같이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있어 피의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았음이 충분히 인정되어
- 범죄혐의가 인정되므로 기소 의견임.

2016. 2. 5.

부산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

특별사법경찰관 * * *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귀하

나. 항목별 작성요령

(1) 피의자(인적사항) 표시

- 피의자가 수명인 경우, 피의자의 성명 앞에 ‘1, 2, 3, ...’ 의 번호를 순차 기재
- 자연인의 경우 실무상 구속피의자 → 불구속피의자 순으로 기재하고, 신병이 동일하면 법정 형인 중한 순서에 따라 기재하며 미체포 피의자는 제일 마지막에 기재
- 법인의 경우, 행위자와 법인을 모두 처벌하는 경우에 행위자→법인 순 기재
- 성명
 - 한글 이름(한자이름) 표기, 별명, 가명이 있으면 괄호 안에 표시
 - 피의자가 성명 등을 묵비하고 있고 다른 증거에 의해 인적사항을 판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명 등 기재란에 ‘성명을 알 수 없음’ 또는 ‘박 아무개’ 라고 기재 후 인상·체격·지문 기타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피의자 사진을 별지로 첨부함.

- 직업 :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직업의 명칭을 기재하고 가급적 상호 등 고유명사를 피함. ex. ○○나이트클럽 종업원(X) → 술집 종업원
- 주민등록번호 : 공부상 확인된 번호를 작성하고 확인이 불가능하면 생년월일을 기재하거나 알 수 없으면 “알수없음” 으로 기재. 피의자의 만 나이는 ‘의견서 작성일자 기준’ 으로 기재
- 주소 : 도로명 주소 기재.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하지 아니함” 또는 “부정” 으로 기재하고, 수형 중 또는 미결수용 중인 자의 경우에는 주거를 기재하고 괄호 안에 수형장소 또는 미결수용장소 및 수용자번호를 기재
- 법인 : 법인의 명칭(법인등기부등본상 명칭) 기재 후 괄호 안에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다음 행에 사무소의 소재지와 직장전화번호 기재하고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또는 여권번호란)을 만들어 기재
 - 외국인의 성명은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성명을 현지발음에 가까운 한글로 작성하고 괄호 안에 알파벳 대문자로 기재(중국인과 일본인은 한자 병기 가능)하되, ‘성→명’ (명→성의 순서로 표기되는 이름은 성→침표→명 순 기재)
-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과 본국에서의 주거, 등록기준지를 기재하고 등록기준지가 없는 경우 출생지를 기재하되, 연락이 될 수 있는 국내거주지도 함께 병기
- 연락처 : 피의자 소환 등의 편의를 위해 피의자가 사용하는 전화번호 등을 최대한 기재

(2) 전과 및 검찰처분관계 기재

- 형사처분이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만을 기재하고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된 것은 기재할 필요가 없다.
-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는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처분(선고)일자의 순으로 혼합기재한다.
- 전과기재는 처분일자→처분관서→처분죄명→처분내용의 순으로 기재하되, 전과가 많은 경우 최근 또는 가장 중요한 전과만 기재하고 나머지 전과는 “~외에 범죄 전력이 ~회 더 있음” 이라고 기재한다.

1. 피의자 김◇◇

- 2015.3.10. 인천지방법원 식품위생법위반 벌금 250만원 외에 범죄전력이 4회 더 있음

(3) 범죄사실 작성 형식

첫째문단 : 피의자는... 하는 사람이다(범죄구성요건의 금지·의무 근거)

둘째문단 : 누구든지 ... 하여서는 아니된다 (금지·의무사항 관련 규정)

셋째문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 하였다/하지아니하였다.

※ 6하~8하 원칙에 따라 관련규정을 위반한 내용을 기재 (위반사항)

넷째문단 : 이로써 피의자는 ... 하였다. (처벌조항 상 문구로 요약 결론)

피의자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에서 ○○농산이라는 상호로 식품 제조·가공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직업 등 금지·의무 근거)

누구든지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의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하였다.(위반사항)

이로써 피의자는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결어)

• 범죄사실이 특정될 수 있도록 ‘8하’의 원칙(공범관계와 동기·원인에 관한 내용을 제외하면 ‘6하’의 원칙)에 따라 기재

- “누가” : 범죄의 주체
- “누구와 함께” : 공범
- “언제” : 일시
- “어디서” : 장소
- “무슨 이유로(왜)” : 동기, 원인
- “무엇에 대하여” : 범죄의 객체 또는 피해자
- “어떤 방법(어떻게)” : 범행수단 및 범행방법
- “무엇을 했는가” : 행위 또는 결과

• 범죄의 주체(피의자)

- ① 피의자가 1명인 경우 범죄사실에 성명 기재 안함. ex) 피의자는 (○)

② 피의자가 수 명인 경우

수명의 피의자가 각기 단독범인 경우	1. 피의자 김○○ 피의자는 하였다 2. 피의자 박○○ 피의자는 하였다
피의자들이 모두 공동정범인 경우	피의자들은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하였다.
피의자 일부는 단독범, 일부는 공동정범	1. 피의자 김○○ 피의자는 하였다 2. 피의자 박○○, 피의자 최○○의 공동정범 피의자들은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하였다.

- 범죄의 일시 : 2014. 7. 21. 23:30과 같이 시각까지 특정하고, 특징이 어려운 경우는 확인된 일시까지 기재하되 ‘경’ 이라는 표현을 사용 ex) 08:00경, 오전경
- 범죄의 장소
 - ① 가능한 한 명확히 기재(범죄사실의 특정 및 토지관할 결정 시 중요)
 - ② 행정구역의 명칭과 건조물이나 시설물 등이 있는 경우 이를 기재하여 특정
 ex)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0 소재 현재산업 옆 부지에
 - ③ 특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확인되는 범위까지 기재 ex) 부산 시내 —부근에서
 - ④ 범행 장소와 결과발생 장소가 상이한 경우는 양자를 모두 기재
 - ⑤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장소는 행정구역 표시 없이 바로 장소만 기재가능
- 범죄의 객체
 - ① 피해자는 성명으로 표시하며, 연령을 기재할 때에는 피해자 성명 옆에 ()를 하고 그 안에 기재하되 ‘범죄일시를 기준으로’ 만 나이를 기재
 - ② 피해품인 경우에는 소유자·관리자 등을 표시함. 피해품은 ‘시가→품목→수량’ 의 순으로 기재함(동종 피해품이 다수인 경우 피해품의 ‘시가 합계→품목→수량’ 순으로 일괄 기재하고 기록에 피해품 전체의 명세를 포함) 시가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하고 소매가격을 표시함이 원칙이나 소매가격을 알 수 없을 때에는 피해자가 신고한 가격을

표시하고 일반인의 관념에 비추어 현저히 높거나 낮은 경우에는 피해품의 가격이 피해자의 신고에 의한 것임을 기재해둠. 품목은 구체적으로 기재함. ex) 피해자 김○○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남자용 롤렉스 중고시계 1개, 피해자 김○○ 소유인 모피코트 1벌 등 시가 합계 700,000원 상당의 의류 3점

- 범죄의 수단, 방법 : 범죄의 유형 및 구체적 상황에 따라 각각각색일 수밖에 없음. 따라서 구성요건별로 간결하면서도 구체적인 상황에 맞추어 기재
- 범죄의 행위와 결과 :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다음 법률에 기재되어 있는 법률용어로 마무리하는 미괄식 문장으로 구성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고의, 목적, 과실)
 - ① 고의범에서의 고의는 범죄사실에 기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 미필적 고의는 과실범과 구분하기 위하여 기재
 - ② 목적범에 있어서의 목적은 반드시 범죄사실에 기재 ex) 원산지를 표시한 농수산물에 다른 농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였다.
 - ③ 과실범에 있어서의 과실의 존재는 반드시 상세히 기재함. (주의의무의 존재 및 그 내용, 주의의무의 해태 및 그 경위와 결과)
- 범죄사실이 수개 인 경우, 범행 하나하나를 열거하는 방법과 별지 범죄일람표를 써서 표시하는 방법이 있음.

피의자를 2014. 2. 20.부터 2014. 3. 25.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번호	일시	장소	범행방법	피해자	피해품			비고
					품목	수량	시가	
1								
2								
3								
합계 20,000,000원 상당								

- 범행내용을 하나하나 특정하여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 방법, 범행횟수, 피해금액의 합계 및 피해자 또는 행위 상대방 등을 기재하는 것으로서 범 죄사실을 특정하여도 무방함.
- 양벌규정에 의해 법인의 대표자(또는 종업원)와 법인을 모두 입건하는 경우 대표자 또는 종업원의 업무내용과 법인의 설립목적(등기부등본에 의함)을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하고, 그 범죄사실도 각각 독립하여 기재

(4) 죄명과 적용법조

- 죄명은 대검찰청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따름
- 수개의 범죄사실 각각에 해당하는 죄명이 있을 때, 각 죄명 앞에 가. 나. 다. 순으로 번호를 붙이고 죄명 상호간의 기재순서는 법정형이 무거운 순서에 의하고 법정형이 동일한 경우에는 범죄사실의 시간적 순서에 의함.
- 적용법조는 범죄사실과 일치하도록 기재하고, 피의자별로 해당 법조문을 기재하되 조문이 조, 항, 호로 구분되었을 경우 항, 호까지 구체적 기재
- 「…하여야 한다.」 또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 등과 같이 금지·명령규정과 처벌규정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에는 ‘처벌규정, 금지·명령규정 순’으로 기재하며, 양벌규정의 경우 ‘양벌규정, 처벌규정, 금지·명령규정 순’으로 기재
- 피의자가 수인인 경우 피의자별로 적용 법조를 기재함이 원칙이나 적용법조가 공통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공통되는 부분을 함께 기재 가능

회사직원이 무단으로 사업장 폐기물을 투기하여 법인까지 처벌하는 경우

“피의자 홍길동의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제58조의 2, 제7조제1항 제2항에 해당하고, 같은 ○○주식회사 행위는 위와 같은 조문 및 같은법 제62조에 해당하는 바”

(5) 수사결과 및 의견

- 범죄사실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피의자가 수명일 때는 피의자별로 수사결과와 의견을 기재 하는 것이 원칙
- 피의자의 진술 요지 및 관련자의 진술, 증거관계 등에 비추어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기재하 여야 하며, 막연히 “증거 충분함”, “증거없음” 을 기재하지말 것
- 기소의견
 - ① 피의자가 범죄사실 전체를 인정한 경우 : ‘피의자가 자백하고 있고 보강증거(고소인,

참고인 등 진술증거 기타 증거자료)가 충분하여 범죄혐의가 인정되므로 기소의견임’
라는 식으로 기재

② 피의자가 범죄사실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한 경우

㉠ 피의자가 인정하는 사실을 기재

㉡ 피의자가 부인하는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의 주장요지 및 제출자료, 참고인의 진술요
지 및 제출자료,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자료를 각각 기재하는데 이러한 주장 및 증
거자료는 시간순서대로 기재

㉢ 피의자가 부인하나 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자료 등 증거자료가 충분하여 범죄혐의
가 인정되므로 기소의견이라는 식으로 기재

“피의자는 범행을 순수히 시인하고, ○○○의 진술 및 매립현장 사진 등에 비추
어 범증 충분하므로 ...”

“피의자는 범행을 부인하나, 참고인 홍길동은 피의자가 야간에 폐기물을 매립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김갑동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며 매립
전·후의 현장 사진의 존재 등에 비추어 범증 충분하므로”

• 불기소의견 : 각하,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등 불기소 의견으로 종결하고자 할 경
우 그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된 요지를 증거관계와 함께 설명하면서 논리 전개

① 각하 : 고소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하여야 할 것이 명백하거나, 친고죄
에 있어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하거나, 고소 고발인의 출석 불응 등으로 진술을 들
을 수 없는 경우 각하 처분

② 혐의없음 : ‘범죄인정안됨’ 과 ‘증거불충분’ 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되어있으나
실무상 ‘범죄인정안됨(피의사실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은 거의 사용되지 않음. ‘증거불충분’ 은 구체적으로 자백의 보강증거가 없는
경우, 피의자의 변명을 뒤집고 달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불충분한
경우를 말함.

③ 죄가안됨 :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위법성조각사유(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나 책임조각사유(형사미성년자, 심신상실자, 강요
된 행위, 야간 등의 과잉방위·피난) 등이 있음.

④ 공소권없음 : 소추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또는 필요적 형면제사유가 있는 경우로

㉓ 확정판결이 있을 때, ㉔ 사면이 있을 때, ㉕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㉖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㉗ 피의자에 대한 재판권이 없을 때(외교관 등), ㉘ 동일사건에 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㉙ 소추요건을 결한 경우(친고죄에 고소가 없거나 반의사불벌죄에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㉚ 법률에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때

- ㉛ 참고인 중지 : 참고인의 소재불명으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수 없을 경우
- ㉜ 기소중지 : 피의자 불출석으로 인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소재불명인 경우

⑤ 범죄인지서

1. 상황

- 수사기관이 수사단서를 얻어 수사를 착수할 때에 상사의 지휘를 받기 위해 범죄사실을 인정한 내용을 보고하는 서류로,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사의 단서 및 그 입수과정, 결과 등 범죄수사에 관계있는 사실을 보고하는 서식
- 수사기관이 범죄인지를 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때에는 입건하여야 한다. 즉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범죄사건부에 등재하여야 한다(수사준칙 제18조제1항)
- 인지사건 송치시 “송치서→압수물 총목록→기록목록→의견서→**범죄인지서**→기타서류” 순으로 편철함.

2. 작성요령

가. 작성예시(수사준칙 별지 제3호서식)

부산광역시	
제 2021-000 호	2021. 2. 5 .
수 신 특별사법경찰과장	
참 조	
제 목 범죄인지	

다음 사람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지합니다.

1. 피의자 인적사항

가. 성 명(한자): 000(000) 직업 회사원

주민등록번호: 000000 - 0000000 00세

주 거: 부산광역시 00구 00로000번길 0, 0동 000호(00동, 00아파트)

등록기준지: 경남 00군 00면 00리 000

나. 법 인 명 : 주식회사 0000(대표이사 : 000)

법인등록번호 : 0000000-00000000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00구 00로 000-0

2. 범죄경력자료

가. 피의자 000은

200*. *. **.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으로 벌금
**만원 외 2건

나. 피의자 주식회사 0000(대표이사 : 000)은

해당사실 없음

3. 범죄사실의 요지

피의자 000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00읍 00로 123-45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0000' 의 총괄 책임자이고, 피의자 주식회사 0000은 00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의자 000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부산광역시 00구 00로 000-00에 소재하는 주
식회사 0000에서 혼합시설(22kW) 1기를 설치운영하면서도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피의자 주식회사 0000(대표이사 : 000)은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의자의 총괄 책임자인 000이 피의자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4. 죄명 및 적용법조

가. 피의자 000은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제1호 및 제23조제1항

나. 피의자 주식회사 0000(대표이사 : 000)은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제1호, 제95조 및 제23조제1항

5. 수사단서 및 범죄 인지 경위

우리 시의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실태 기획수사 계획” 에 따라 2018.

1. 22.(금) 부산광역시 00구 00로 000-00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0000을 수사한 결과, 혼합시설(22kW) 1기를 설치운영하면서도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서, 현장사진, 피의자 000 진술 등을 통하여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인지함. 끝.

경로	수사지휘 및 의견	구분	결재	일시
특별사범경찰관 보건주사 김○○		기안		
		결재		

나. 작성방법

- 피의자 인적사항, 범죄사실의 요지, 죄명 및 적용법조 작성은 의견서의 해당 항목 작성요령과 동일하며, ‘수사단서 및 인지경위’ 란에는 실무상 범죄인지 전에 조사한 내용들을 모두 기재함.

⑥ 피의자신문조서

1. 의의

- 피의자의 진술을 문답식으로 작성한 서류

2. 작성요령

가. 첫 페이지 양식 (수사준칙 별지 제17호(갑)서식)

피의자신문조서	
<p>피의자 김○○</p> <p>위의 사람에 대한 식품위생법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p> <p>2020. 3. 13. 부산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에서</p> <p>특별사법경찰관 보건주사 정○○는(은)</p> <p>특별사법경찰리 행정서기 박○○를(을)</p> <p>참여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다.</p>	
문	<p>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등을 말하십시오.</p> <p>성명은 김○○ (한자성명)</p> <p>주민등록번호는 681001-1000000 직업은 무직</p> <p>주거는 부산광역시 ○○구 ○○로 ○○ ○○아파트 1동 102호</p>
답	<p>등록기준지는 경상남도 ○○시 ○○구 ○○로 ○○</p> <p>직장 주소는 부산광역시 ○○○구 ○○○로 ○○○</p> <p>연락처는 자택 전화 051-000-0000 휴대전화 010-0000-0000</p> <p> 직장 전화 051-000-0000 전자우편(e-mail)</p> <p> 입니다.</p>
<p>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사건의 요지를 설명하고 사법경찰관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p>	

- 죄명은 붙여쓰기 기재
- 조사자와 참여자 기재 (조사자는 사법경찰관으로 사법경찰리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 작성 : 의견서 작성방법과 동일
- 피의사실의 요지 : 고소되거나 입건된 사실의 개략적 내용으로 범죄일시, 장소, 피해품 등을 요약한다.
- 2회 이후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수사준칙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함.

나. 진술거부권 등 고지확인서 (수사준칙 별지 제17호(을)서식)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

1. 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3. 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4. 귀하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고지를 받았는가요?

답

문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답

문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답

이에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 실무상 진술거부권 고지확인서(별지 제17호(을)서식)의 네모 칸 안의 고지사항을 피의자에게 읽어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음. 진술거부권 등 확인서를 인쇄하여 피의자에게 읽어보라고 건네준 경우에는 진술거부권 등 미고지가 되어 증거능력이 배제될 수 있음. 만약 피해자가 자백을 한다면 곧바로 신문을 진행하지 말고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고 그 확인서를 받은 다음에 신문을 진행해야 함.

문 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고지를 받았는가요?

답 **고지받았습니다**

※ 답변을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하고 날인 또는 무인(실무)하게 하거나 수사관이 답변을 타자로 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함.

-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는 굳이 신문하지 말고 그 경위를 수사보고서로 상세히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한다. 또한 피의자가 출석요구할 때 피의자에게 변호인 참여 하에 조사받을 수 있는 것을 알려주지 않아 피의자가 단독 출석 후 변호인 참여하에 조사를 받겠다고 주장한다면 굳이 신문하지 않고 돌려보내야 하며 그 경위를 수사보고서로 상세히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한다.

부 산 광 역 시

수신 특별사법경찰과장.

2020. 3. 13.

제목 수사보고(피의자 진술거부권 행사로 조사 불능)

금일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려 하였으나 피의자가 “수사기관은 믿지 못해 법원에 가서 모든 내용을 진술하겠다.” 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여 조서를 작성하지 못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끝.

2020. 3. 13.

부산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

특별사법경찰관 * * *

다. 전과관계 및 환경조사

이 때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 ○○○을 참여하게 하고 피의자에게 아래와 같이 문답하다.

- ※ 변호인이 참여한 경우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변호인이 참여하였음을 기재해 줌.
- ※ 신분증 제출 및 확인

문 피의자가 흥길동인가요.

답 예. 제가 흥길동입니다. 제 주민등록증을 제출하겠습니다.

- ※ 이 때 피의자로부터 주민등록증을 받아 본인임을 확인하고 사본한 후 조서 말미에 편철하기로 하고 주민등록증을 반환한 후 계속 문답하다.
- ※ 전과관계 : 피의자가 전과관계에 대해 기억하지 못한다면 범죄경력조회에 의해 확인한 피의자의 범죄경력을 문답으로 기재

문 피의자는 형사처벌이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

답 저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문 피의자의 범죄경력조회에 의하면 피의자가 2004.12.3. 인천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징역1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되어있는데 맞는가요.

답 예, 맞는 것 같습니다.

- ※ 환경조사 : 수사준칙 44조, 환경, 교육, 경력, 가족상황, 재산정도 및 생활수준 병역관계, 훈장·기장·포장 및 연금의 유무 등(피의자가 불쾌감을 느끼는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이 있으므로 무리하게 신문을 하지 말아야 함.)

문 피의자의 건강상태는 어떤가요.

답 2016년에 위암수술을 받았지만 완치되어 조사를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 ※피의자의 건강이 좋지 않아 조사를 받는데 지장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진술의 임의성이 의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사를 받는데 지장이 없다는 답변이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좋음.

라. 범죄사실 및 정상관계 조사

- 사건관계인의 조사나 현장 단속보고서 등을 통해 범죄사실(6하 또는 8하 원칙) 및 증거자료를 정리한 후 이를 기초로 피의자 신문을 한다.
- 범죄사실의 요지 즉 “피의자는 어떠한 범죄를 한 사실이 있나요” 라고 물어
 - 피의자가 자백하면 이후 범죄사실에 들어갈 내용을 개별적으로 묻고 피의자의 대답을 정리하여 기재하면 됨. 자백을 하더라도 증거를 제시하고 확인해야함.
 - 부인한다면 범죄사실의 일부 즉 “피의자는 (언제) (어디에) 있었던 것은 사실인가요.” 또는 “피의자가 (언제)(어디에서) 임신물 채취와 관련하여 단속당한 것은 사실인가요.” 라는 식으로 피의자가 인정할 만한 간접사실을 물어 피의자의 진술을 최대한 이끌어낸 후 사건관계인의 조사나 현장단속보고서 등에 의해 확보한 증거로 추궁한다.
- ‘8하’ 의 원칙(공범관계와 동기·원인에 관한 내용을 제외하면 ‘6하’ 의 원칙)
 - “누가” : 범죄의 주체
 - (“누구와 함께” : 공범의 유무, 공모일시, 장소, 내용 등에 대하여 조사)
 - “언제, 어디서” : 일시는 공소시효의 기산, 장소는 수사기관의 관할과 관련있으므로 특정해야 함. 피의자가 기억해 답변할 수 있는 한도에서 범죄일시와 장소를 답변하도록 하고 조사자가 피의자에게 정확한 범죄일시와 장소를 확인하는 문답을 하면 됨.
 - (“무슨 이유로(왜)” : 범행동기는 정상참작에 필요하고 진술의 신빙성 판단의 자료가 됨.)
 - “무엇에 대하여” : 범죄의 객체가 물건인 경우 종류, 수량, 가격, 소유관계 등을 구체화
 - “어떤 방법(어떻게)” : 범행수단 및 범행방법을 최대한 구체적 기재
 - “무엇을 했는가” : 행위 또는 결과를 명확히 기재
- 자료나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조서에 그 내용을 기재

문 : 피의자가 매립한 장소를 굴착기로 파헤친 후 그 양을 측정한 결과 이와 같이 15톤 트럭 약 30대분으로 100t가량 되는데 이의가 있는가요?

이때, 피의자에게 기록 제00쪽에 편철되어 있는 현장사진을 열람케 한 바,

답 : 제가 매립한 내용이 맞으며 분량도 이의가 없습니다.

- 피의자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문답(법 제242조 후단)과 피의자에게 진술한 대로 기재되었는지 유무를 문답(법 제244조제2항)을 반드시 해야함.

문 달리 제출할 유리한 증거나 더 할 말이 있나요

답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테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이상의 진술내용에 대해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나요.

답 **없습니다** (자필기재)

(피조사자 날인) (조사자 날인) - 조서의 마지막이라는 표시

마. 말미서식

- 통상의 경우 : 수사준칙 별지 제21호서식

열람하게 하였던 바	
위의 조서를 진술인에게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
읽어준 바	
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한다.	
진술자 김○○(자필서명) (날인)	
년 월 일	
부산광역시	
특별사법경찰관 정○○(자필서명)(날인)	
특별사법경찰리 박○○(자필서명) (날인)	

- 조서내용을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주고, 오기나 증감사항이 없다고 진술할 경우에는
 - ① 열람하게 한 경우에는 “읽어준 바” 라는 부분을 두 줄로 그음.
 - ② 진술자 및 조사자 란에 피조사자와 조사자가 서명날인
 - ③ 조서 앞 · 뒷장에 날인(무인)하여 간인(피조사자는 조서 오른쪽 끝부분, 조사자는 왼쪽 끝부분에 각각 간인)

- 피조사자가 서명·날인을 거절한 경우 : 억지로 서명·날(무)인하도록 강요하지 말고, 조서 말미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종결

※ 공판에서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더라도 조사한 사실과 결과를 명확히 할 것

피의자는 이 조서의 기재 내용은 자신이 진술한대로이나 서명(기명날인, 무인)을 하게 되면 범행이 인정될 가능성이 많다는 이유로 서명(기명날인, 무인)을 거부함.

- 참여인이 있는 경우

위 조서는 참여인을 참여하게 하고 진술자에게 읽어준 바, 진술한대로 오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기명날인, 무인)하게 하다.

※ 변호인 참여시 말미조서 진술자 서명날인 하단에 참여변호인(○○○인)으로 기재할 것

- 서명 불능인 경우 : 피조사자가 성명을 기재할 수 없는 경우 그 이유(무학, 질병, 증상 등)를 기재하고 성명을 대신 기재한 후 날인 또는 무인케 함.

위 조서를 진술자에게 읽어준 바, 진술한 대로 오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였으나 문맹으로 서명불능 하므로 본직이 대리서명하고 간인한 후 날(무)인케 하다.

- 통역인이 있는 경우 : 별지 제22호서식

열람하게 하였던 바

통역인을 통하여 본인에게	진술한 대로 오거나 증감
읽어준 바	

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통역인과 같이 간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한다.

통역인	김○○(자필서명) (날인)
진술자	○○○○○○ (자필서명) (날인)

⑦ 출석요구서 등과 출석요구통지부

1. 상황

-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서(수사준칙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야 하나, 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실무상 전화소환이 많이 사용(수사준칙 제36조제3항)
- 출석요구서 사본이나 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출석요구한 취지를 적은 수사보고서를 기록에 편철(수사준칙 제36조제4항)
- 출석요구를 한 경우에는 출석요구통지부(수사준칙 별지 제12호서식)에 해당 사항을 적어 비치(수사준칙 제36조제7항, 제122조제1항제10호)

2. 작성요령

가. 출석요구서(수사준칙 별지 제10호서식)

제	호
출석요구	
귀하에 대한 피의사건(고소인 , 고발인 , 진정인)에 관하여 문의할 일이 있으니 . . . 오전(후) 시에 ○○○○(기관명) ○○과 ○ ○계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의사실 요약:	
출석하실 때에 반드시 이 출석요구서와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및 도장, 그리고 아래 증거자료와 그 밖에 귀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를 가지고 나오시기 바라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귀하가 전에 충분히 진술하지 못하였거나 새로이 주장하고 싶은 사항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이 있으면 이를 정리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1.	
2.	
3.	

지정된 일시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이 출석요구서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계(전화 -)에 연락하여 출석일시를 조정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체포될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

특별사법경찰관

(인)

사건담당자

(인)

나. 수사보고(전화 출석요구)

부 산 광 역 시

수신 특별사법경찰과장

2020. 3. 10.

제목 수사보고(피의자 김○○ 전화 출석요구)

피의자 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전화로 출석을 요구하였기에 보고합니다.

아래

- 출석요구일시 및 장소 : 2020. 3. 13. 11:00 특별사법경찰과 조사실
- 통화일시 : 2020. 3. 10. 9:30
- 통화수단 : 보고자 사무실 전화 (051-888-0000) → 피의자 휴대폰(010-0000-0000)
- 통화내용 : 위와 같이 출석을 요구하였고 피의자는 출석하겠다고 답변. 끝.

위 보고자

부산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

특별사법경찰관 * * * (인)

다. 수사보고 (피의자 출석불응)

부 산 광 역 시

2020. 3. 13.

수신 특별사법경찰과장

제목 수사보고(피의자 출석불응)

피의자가 다음과 같이 출석요구에 불응하였기에 보고합니다.

○ 출석요구 일시

- 2020.3.13. 11:00, 우리 시 특별사법경찰과 조사실로 출석하도록 요구(기록 00 쪽 출석요구 수사보고)

○ 출석불응 확인

-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아 금일 12:00경 피의자의 휴대폰(010-0000-0000)으로 통화하여 출석불응사유를 확인하자 피의자는 “나는 그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출석할 이유도 없고 앞으로 계속 출석을 요구해도 출석하지 않을 것이니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하여
- 보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되거나 나중에 지명수배가 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출석하라.” 라는 등 설득을 하였으나 피의자는 “그래도 나는 출석하지 않을테니 체포하든 말든 마음대로 하라” 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는 등 앞으로도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하였음. 끝.

위 보고자

부산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

특별사법경찰관 * * * (인)

라. 출석요구 통지부(수사준칙 별지 제12호서식)

출석요구통지부							
출석요구일시	출석자		사건번호	출석요구통지		결과	담당자 확인 (서명 또는 날)
	구분	성명		통지일	방법		
1							
2							
3							

작성요령

- 구분란 :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으로 기재
- 방법란 : “우편” 또는 “전화” 등으로 기재
- 결과란 : 출석일시 및 조사여부를 기재

범죄사실 및 체포를 필요로 하는 사유

■ 범죄사실

피의자는 2020. 7.경부터 부산 000구 00동 100-123 00상가 000호에서 '00농산' 이라는 상호로 쌀을 판매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6하 원칙에 의해 범죄사실 기재) ~~~~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농수산물인 쌀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 체포를 필요로 하는 사유

○ 범죄사실의 소명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 기재)

피의자가 중국산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쌀포대를 풀어 이를 이천쌀로 표시되어 있는 포대로 옮겨 담는 광경을 목격한 제보자의 진술, 제보자가 그 장면을 촬영하여 제출한 사진, 피의자에게 중국산 쌀을 공급한 중국상회 대표 이△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의자가 본건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

○ 체포를 필요로 하는 사유

피의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로서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음.(기록 제12, 25, 30쪽 출석 불응 수사보고서)

나. 신청서의 기재사항

(1) 인치·구금할 장소

- 인치할 장소는 피의자를 체포한 다음 인치할 검찰청 또는 지청, 경찰서, 특별사법경찰과 사무실 등 수사관서를, 구금할 장소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일시적으로 유치 또는 구금할 구치소나 유치장 등을 각 기재
- 수사상 특히 필요하여 인치할 장소를 청구 당시 특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택일적으로 정하여 기재가능(000경찰서 또는 체포지에 가까운 경찰서)

(2) 체포영장의 유효기간

- 유효기간은 7일을 원칙(초일 불산입)으로 하고, 지명수배 또는 연고지가 여럿인 경우 등 소재파악에 7일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를 소명하여 7일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으로 신청가능
- 유효기간의 기재가 없거나 불명한 경우의 유효기간은 7일로 보며, 7일 미만의 유효기간으로 발부된 체포영장의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 내에서만 유효

(3) 피의자의 인적사항

- 피의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인상·체격 그 밖에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을 기재하며, 피의자의 직업·주거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함.

(4) 변호인의 성명

-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한 변호인의 성명을 기재

(5) 범죄사실 및 체포를 필요로 하는 사유

- 수인의 피의자가 공범관계에 있는 경우, 피의자별로 별개로 영장을 청구하여야 함.
- 범죄사실은 일시, 장소, 범행방법, 결과 등 특정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되고 공소사실과 같은 수준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음.
- 수개의 범죄를 조사 중인 경우는 그 중 일부 범죄사실만 기재하여도 무방하나, 별건수사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중요한 범죄사실을 기재해야 함.
- 공범관계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며 피해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하고 수사기록도 범죄사실과 관련된 부분만 분리하여 제출해도 무방함.
-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영장청구서에 어떤 증거에 의해 범죄혐의가 소명되는지 그 취지를 기재할 필요가 있음.

(6)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

- 피의자의 소재파악에 7일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 취지 및 사유를 소명해야 하고, 지명수배자에 대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공소시효 만료일까지로 하고 있다.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판예규)」 제18조제1항)

(7) 여러 통의 영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

- 피의자의 연고지가 여러 곳인 경우와 같이 수통의 체포영장이 필요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통수의 범죄사실의 요지를 따로 기재한 서면을 영장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함.(규칙 제93조 제2항)
- 수 통의 영장은 모두 원본으로 집행력을 가지며, 피의자가 체포된 경우 다른 체포영장은 효력을 상실

(8) 재청구의 취지 및 이유

- 체포영장을 재청구하는 때에는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함.(규칙 제99조, 수사준칙 제56조)

(9)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체포영장

- 현재 수사 중인 다른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발부된 유효한 체포영장이 있는 경우 그 취지 및 범죄사실을 기재

다. 소명자료의 제출

- 체포의 사유 및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규칙 제96조제1항)
-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며 소명의 정도로 충분하고 전문법칙 등이 적용되지 아니함.
- 출석요구에 불응 또는 불응의 염려가 있거나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로서 출석요구서 사본, 출석요구통지부 사본, 출석요구를 하면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취지의 수사보고서, 피의자의 신분·경력·교우·가정환경 등에 관한 서면, 전과조회서를 제출함. 전화로 출석요구한 경우에는 통화일시, 수화자, 수화자와 피의자의 관계, 피의자의 연락가능성, 통화내용 등을 상세히 기재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

⑨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서와 압수조서

1. 작성요령

가.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서(수사준칙 별지 제55호~제57호)

(기관명)	
제 호	년 월 일
수신 ○○지방검찰청	발신
제목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일반용)	특별사법경찰관 인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압수·수색·검증하려고 하므로, 년 월 일까지 유효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세)
	직 업
	주 거
번호인	
압수할 물건	<p>※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기재사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통기한 도래하거나 도과한 닭, 오리 등 축산물 또는 △△유통에서 취급하는 제품 라벨용지(라벨지), 유통기한을 위조할 수 있는 도구 컴퓨터 본체, 매출장부, 회계장부, 업무수첩(이중장부 또는 비밀장부), 내부 CCTV 저장매체, USB 등 이동저장 장치
수색·검증할 장소, 신체 또는 물건	부산광역시 00구 00동 △△유통 작업장, 창고(냉장, 냉동), 사무실
범죄사실 및 압수·수색·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	별지와 같음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취지와 사유	△△유통은 주말에는 근무를 하지 않고 있고 유통기한이 지난 닭을 찬물로 씻어 재포장하는 현장에서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할 시안으로 은밀히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적절한 압수수색 시기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7일을 초과할 수 있음.(7. 20. 청구하면서 유효기간 7. 31.까지로 기재)
둘 이상의 영장을 신청하는 취지와 사유	
일출 전 또는 일몰 후 집행을 필요로 하는 취지와 사유	
신체검사를 받을 자의 성별, 건강상태	
제 호	○○지방검찰청 년 월 일
수신 지방법원	
제목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	
위와 같이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가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동 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지방검찰청 검사 인
기각취지 및 이유	

범죄사실 및 체포를 필요로 하는 사유

■ 범죄사실

- 6하 원칙에 의해 기재

■ 압수·수색·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

- 범죄수사에 필요한 점
-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
-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점
- 압수·수색·검증의 필요성 기재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기재사례

△△유통 김□□는 유통기한을 고쳐 유통하거나 이미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도래한 닭을 유통시켜 서민들의 건강에 큰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 이후 아무런 개전의 정이 없이 계속적으로 같은 방법으로 축산물을 유통시켜 자신의 이득만을 챙겨오고 있는 자인 바, 압수수색검증을 통해 유통기한을 위조할 때 사용한 범행도구 및 유통기한이 도래하거나 도과한 닭을 확인하여 혐의사실 입증하고자 하고, 공무원들과 유착되어 뇌물을 상납하고 교묘한 수법으로 단속망을 빠져 나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고자 함.

〈식품위생법 위반〉 기재사례

2014. 1. 26. 20:40경 위 ○○다방에 손님 윤☆☆(58세)이 들어가 종업원 피의자 이△△, 피의자 진▽▽가 함께 같은 건물 1층 ○○음식점에 들어가 보내 손님 윤△△과 합석시킨 후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식품접객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불법영업한 것으로 당시 영업한 사실이 있는 영업장부 2권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 받아 불법영업 등에 대하여 수사하고자 합니다.

나. 압수조서(수사준칙 별지 제62호서식)

압수조서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에서 특별사법경찰관 는(은) 특별사법경찰리 와(과) 아래 사 램(들)을 참여하게 하고 별지 목록의 물건을 다음과 같이 압수하다.				
압수경위				
※ 압수경위는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압수 당시의 물품의 위치 및 상태, 임의제출 여부, 압수의 필요성 등을 간략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예1) [임의제출] 범죄현장에 남은 물건으로서 참고인 ○○○가 범죄행위에 제공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소유자 ○○○가 임의제출하므로 압수하다.				
(예2) [사전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위 일시, 장소에서 현장에 있던 피의자에게 00지방법원00지원 판사 000가 발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제000호)를 제시하고, 피의자를 참여하게 한 뒤 작업장 및 사무실을 수색하여 별지 압수목록에 기재한 증거물을 발견하고(압수수색 상황 및 본건 증거물에 대해서는 디지털카메라로 촬영), 이를 압수한 뒤 피의자로 하여금 소유권포기여부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피의자에게 압수증명서를 교부했다.(압수수색검증 시간 13:00~15:00)				
(예3)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위 장소에서 피의자로 추정되는 자가 가짜 '가나다' 가방을 제조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신빙성 있는 제보가 있어, 이를 확인하고자 2017. 4. 24. 12:40경 특별사법경찰리 행정서기 김▽▽와 함께 위 공장 출입문에 접근하여 안을 살폈으나 불투명 유리출입문으로 시정된 상태여서 내부를 관찰하지 못하였고, 다만 미싱기계로 박음질하는 소리가 들려 가방 제작 중인 것으로 판단, 건물관리사무소 직원으로 위장하여 출입문을 열게 한 다음, 사장인 피의자를 부르고 특별사법경찰 신분증 제시와 함께 소속을 밝힌 뒤 제보 내용을 알려 주고 주위를 둘러 보자 피의자를 비롯한 종업원 여러 명이 가짜 '가나다' 가방을 제작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등을 고지하고) 추궁하자 순순히 가짜 '가나다' 가방을 제조, 판매해 온 사실을 인정하므로(종업원들은 정상적인 가방 하청 임가공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 13:10경 피의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함과 동시에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체포현장에서의 압수) 규정에 의거, 법관 영장 없이 현장을 수색하여 별지 압수목록 기재 물건을 본건 증거물로 압수하고 17:20경 종료하였다.				
참 여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명 또는 날인
	이00	000000-1000000	기재	이00
년 월 일 특별사법경찰관 인 특별사법경찰리 인				

-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검증조서, 실황조사서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하여 압수조서를 갈음 가능(수사준칙 제74조제3항)

예시1) 이 때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00을 임의제출 받아 영장없이 압수하고 압수목록을 작성한 후 본 조서 말미에 편철하다.

2.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 별지 제3호(금융 위원회고시)

<h3>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h3> <p>(법 제4조제2항제6항 및 제4조의2) 수신처 : 신한은행 전산부(전화 : 02-200-2222, 팩스 : 02-200-1234)</p>			
문서번호※	2018-1004	요구일자	2018. 8.28.(화)
요구기관명		부산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 (전화 : 051-888-0000, 팩스 051-000-0000)	
요구자	근무부서	직책	성 명
담당자	부산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	특별사법경찰관 지방행정주사보	
책임자	부산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	특별사법 경찰과장	
요구 내용	명의인의 인적사항 ¹⁾	김00(700715-1000000)	
	요구대상 거래기간	2018.1.1.~2018.7.30.	
	요구의 법적근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사용목적	범죄수사	
	요구하는 거래 정보등의 내용	위 김00 명의의 계좌(계좌번호를 알면 기재)에 대한 입출금거래내역서(해지계좌 포함) 전산출력 및 동 계좌의 입출금 자금원 확인에 필요한 금융 거래의 정보 또는 자료 일체	
통보 유예※	유예기간	거래정보 등의 제공일로부터 4개월	
	유예사유	증거인멸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함(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 률 제4조의2제2항제2호)	
특이 사항※	모든 자료는 파일화(EXCEL, PDF, JPG등)하여 회신바랍니다. 회신 시 해당 금융기관명과 영장 번호 및 요구서 번호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1) 명의인의 인적사항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각호의1을 의미 붙임 : 1.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2. 동의인 신분증 사본 1부. 2. 공무원증 사본 1부. 끝.			
요구기관 기관장 인			
※ 문서번호, 통보유예 및 특이사항은 필요한 경우에만 기재(통보대상이 아닌 경우 그 법적근거 등의 사유는 특이사항에 기재)			

3.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서

• 수사준칙 별지 제56호

(기관명)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지방검찰청	발 신
제 목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 추적용)	특별사범경찰관 (인)
다음 사람에게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압수·수색·검증하려 하니 ○○년 ○○월 ○○일까지 유효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세)
	직 업
	주 거
변 호 인	
대상 계좌	계 좌 명 의 인 [O]피의자 본인 []제3자(인적사항은 별지와 같음)
	개설은행 계좌번호 별지1 기재와 같음.
	거 래 기 간 2011.10.1.~2012.3.31.
	거래정보등의 내용 별지2 기재와 같음.
압수할 물 건	별지2 기재와 같음.
수색 검증할 장소, 또는 물건	별지3,4 기재와 같음.
범죄사실 및 압수 수색· 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	별첨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취지와 사유	연결계좌 추적 등에 상당한 시일 소요
둘 이상의 영장을 신청하는 취지와 사유	
일출 전 또는 일몰 후 집행을	확인할 금융 계좌의 수량이 방대하고, 금융기관의 업무편의를 위하여 일출 전 또는 일몰 후 집행 필요성 있음.
○○지방검찰청	
제 호	년 월 일
수신 지방법원	
제목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금융계좌 추적용)	
위와 같이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지방검찰청 검사 (인)	
기각취지 및 이유	

<#별지1>

■ 대상계좌 및 대상자

<특정 계좌>

순번	계좌 명의인	금융기관명	요청대상계좌	요청거래기간
1	김OO	OO은행	111111-55-000000	2010. 1. 1.~2015. 2.
2	불상	△△은행	222222-55-666666	2010. 1. 1.~2015. 2.

<명의 계좌>

순번	대 상 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비 고	요청거래기간
1	나OO	390101-111111	피의자 본인	2005. 1. 1.~2015. 2. 10.
2	(주)OO상사	111-22-55555	피의자 운영 법인	2009. 1. 1.~2015. 2. 10.

- 요청대상 계좌 : 위 대상자 명의로 #별지4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 (대출·해지 계좌 등 포함한 모든 계좌)

<수표관련 계좌>

순번	발행은행	발행점	발행일	금액x장	수표번호
1	OO은행	서초지점	2013. 2. 18.	100만원x2장	12345678~79
2	△△은행	강남지점	2014. 12. 17.	1,000만원x10장	11111111~20

- 요청대상 계좌 : 위 수표의 발행자원인 계좌 및 위 수표가 입금된 계좌
- 요청거래기간 : 2013. 1. 1. ~ 2015. 2. 10.

<기 타>

2011. 9. 23.부터 2011. 10. 8.까지 OO은행 OO지점 은행직원 OOO으로부터 5만원권으로 현금 500만원 이상 출금된 계좌

〈#별지2〉

■ 압수·수색할 물건

1. #별지1 관련 계좌에 대한 고객정보조회서(CIF), 계좌개설신청서, 거래내역서(거래시각, 상대계좌정보 포함한 거래내역 관련 전산 Raw Data), 위 거래내역과 관련된 전표, **입출금(고)** 자원 관련 전산자료, 상대계좌의 거래 관련 전표, 수납장, 지급장, 시재장, 수표 사본, 수표 발행의뢰서, 수표의 제시정보 전산자료,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 관련 전산자료, 마이크로필름, 현금인수도부 등 현금거래임을 확인 가능한 자료, 대리인·배서인 고객정보조회서(CIF)

※ 본 항 및 아래 항의 자료 및 정보가 편철되어 있는 경우 해당일의 전표철, 전산입력되어 있는 경우 해당일의 전산자료

2. 위 1항 기재 계좌의 입출금(고) 자원과 관련된 직전·직후 계좌[다만, 그 계좌가 가상계좌 또는 금융기관의 모계좌인 경우 실제 입출금(고)된 고객의 계좌]의 고객정보조회서(CIF), 계좌개설신청서, 거래일 전후 3개월 거래내역서, 위 거래내역과 관련된 전표 및 상대계좌의 고객정보조회서(CIF), 계좌개설신청서

※ 위 1항 및 2항 기재 계좌의 입출금 자원이 유가증권청약증거금과 관련된 거래인 경우 유가증권청약과 관련된 서류 및 전산자료

3. 위 1항 및 2항 관련 계좌에 수표(자기앞·당좌·가계수표 등 포함)가 입금 되었을 경우 그 수표의 발행자원 관련 전표, 수표발행의뢰서, 그와 함께 발행된 수표의 사용 관련 전표, 그 수표가 다른 수표를 자원으로 재발행된 것일 경우 발행자원 관련 전표, 위 각 수표의 사본, 제시정보 전산자료, 발행자원 관련 계좌 및 수표가 입금된 계좌의 고객정보조회서(CIF), 계좌개설신청서, 입출금일 전후 3개월 거래내역서

4. 위 1항 및 2항 관련 계좌에서 수표로 지급되었을 경우 또는 그 수표를 자원으로 다른 수표가 재발행 되었을 경우 위 각 수표의 사본, 사용 관련 전표, 제시정보 전산자료, 현금교환자·배서자·발행의뢰인의 고객정보조회서(CIF), 위 수표와 함께 입금된 수표의 발행자원 관련 전표, 수표발행의뢰서, 위 각 수표가 입금된 계좌 및 발행자원 계좌에 대한 고객정보조회서(CIF), 계좌개설신청서, 입출금일 전후 3개월 거래내역서

5. #별지1 기재 대상자 명의의 대여금고 및 보호예수와 관련된 금융자료(사용내역 등 전산자료 포함) 및 대여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는 각종 장부, 메모지, 통장, 서류 등 본건 관련자료

6. 위 대상자 명의로 외화거래한 내역(당·타발송금, 환전 등), 양도성예금증서 및 수표 거래한 내역(발행·사용에 관한 자료포함), 그 수표와 관련된 위 제3내지 4항 기재 사항
7. 위 대상자 명의로 가입한 보험 관련자료(가입신청서, 보험료 및 보험금 납입·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 위 보험을 담보로 대출이 발생한 경우 그 대출금의 지급 및 상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8. 위 대상자 명의로 개설 또는 발행된 신용카드·체크카드·직불카드·기프트카드 등의 개설신청서 및 카드사용과 관련된 전산자료 및 전표, 카드대금 결제에 관한 자료
9. 위 거래와 관련된 점포 CCTV 자료 및 현금입출금기 등 자동화기기 녹화자료, 위 거래 중 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폰뱅킹 등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거래에 사용된 IP주소, 전화번호, 맥 어드레스(Mac address)

〈#별지3〉

■ 압수·수색할 장소

- #별지4 기재의 금융기관 본점 전산부 또는 각 지점
- 위 압수·수색할 물건의 금융거래 자료 및 정보를 보관·관리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점포(전산부, 서류창고, 서류보관 위탁창고 등 포함) 또는 부서(고객정보 등 금융거래 전산자료를 공유하고 있는 금융기관 부서포함)
- 각 금융기관의 소재지가 이전되었을 경우 이전된 장소, 금융기관이 청산·인수·합병된 경우 그 영업을 승계한 기관 및 그 금융기관 자료를 보관중인 장소

<#별지4>

< 압수·수색 대상 금융기관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기관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7.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8.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9.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10.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1.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연합회)
1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3.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1. 「국채법」 및 「공사채등록법」에 의한 채권등록기관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4.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5.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6.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7. 「산림조합법」에 의한 지역조합·전문조합과 그 중앙회
8.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10.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회사

○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예탁결제원,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⑪ 수사결과보고서

1. 상황

- 수사를 마무리하게 되면 수사결과보고서를 상급자에게 보고한다.

2. 작성요령

- 수사결과보고서 작성요령은 의견서 항목별 작성요령과 동일하다.

<h2 style="margin: 0;">부산광역시</h2> <p style="margin: 10px 0;">제 0000-00000 호</p> <p style="margin: 5px 0;">수 신 :</p> <p style="margin: 5px 0;">참 조 :</p> <p style="margin: 5px 0;">제 목 : 수사결과 보고</p>				
<p style="margin: 10px 0;">○○○○○○○○○ 피의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수사하였기에 결과를 보고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의자 인적사항 2.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3. 범죄사실 4. 적용법조 5. 증거관계 6. 수사결과 및 의견 				
경 로	수사지휘 및 의견	구분	결 재	일시

12 기타서류

1. 범죄통계원표

- 특별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할 때는 사건마다 범죄통계원표를 작성하여 기록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검찰에서 전산입력(수사준칙 제27조제1항)
- 범죄통계원표는 대검의 형사정책 활용을 위한 것으로, 발생 통계원표(발생사건표), 검거 통계원표(검거사건표), 피의자 통계원표(피의자표) 등이 있음.
- 발생사건표는 사건발생기관에서, 검거사건표와 피의자표는 송치기관에서 작성하게 된다.
- 범죄통계원표 양식은 각 지방검찰청 사건과에서 수령
- 작성요령
 - 발생사건표(청색양식)와 검거사건표(검정색양식)는 ‘죄명 별’ 로 작성하며 피의자표(녹색양식)는 ‘피의자 별’ 로 작성한다.(1인 수죄의 경우, 발생사건표와 검거사건표는 각 죄마다 1매씩 작성하고, 피의자표는 가장 중한 죄 또는 주된 죄에 대하여만 1매 작성)
 - ※상세작성요령은 범죄통계 개선(대검찰청 예규) 참고

2. 수사 관련 장부 등

가. 관련 장부 및 서류

- 특별사법경찰사무를 취급하는 행정기관에 비치하여야 할 장부 및 서류는 수사준칙 제122조에서 정하고 있음.

나. 장부 등 관리

- 범죄사건부 및 체포·구속인명부는 미리 매 장마다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간인을 받아야 함(수사준칙 제122조제2항)
 - ※범죄사건부 및 체포·구속인명부는 통상적으로 연말 또는 연초에 검찰청에 의뢰하여 일괄 간인을 받고 있음.
- 서류철에는 색인목록을 붙여야 함(수사준칙 제131조)
 - 서류를 철한 후 일부를 빼낼 때에는 그 색인목록 비교란에 그 연월일과 사유를 기재하고 담당 특별사법경찰관이 날인하여야 함.

- 특별사법경찰사무에 관한 장부와 서류철은 해마다 갱신하여야 함. 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연도 구분을 명백히 표시하여야 함.(분계지 등 사용)(수사준칙 제133조)
- 장부 및 서류는 일정기간 이를 보존하여야 함.(수사준칙 제134조)
 - 수사관계예규철 : 영구
 - 범죄사건부, 압수부, 피의자소재발견처리부, 체포·구속인명부, 수사종결사건 (송치사건) 철, 내사종결사건철, 번사사건종결철, 수사미제사건기록철 : 25년
 - 통계철 : 5년
 - 통신제한조치 관련 대장·부책, 몰수·부대보전·추징보전(취소) 신청부 부책 : 3년
 - 구속영장신청부, 체포영장신청부, 체포·구속영장집행원부, 긴급체포원부, 현행범인체포원부,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부, 출석요구통지부, 체포·구속인접견부, 체포·구속인 교통부, 체포·구속인 진료부, 물품차입부, 처분결과통지서철, 검시조서철, 잡서류철 : 2년

02

부산시 특별사법경찰 현황

01 _ 전담조직 및 인력

02 _ 전담조직 설치근거 및 추진경과

부산시 특별사법경찰 현황

01

전담조직 및 인력

01. 전담조직 및 인력 ('21.8월말 기준)

① 특별사법경찰과 조직·인력 및 지명직무

□ 기구 -1과 4팀



□ 인력 - 27명

(단위 : 명)

구분	계	4급	5급						6급					7급			
			행정	행정 환경	행정 보건	행정 보건 식품	식품	보건	행정	보건	식품	환경	농업 수의	사회 복지	행정	보건	환경
정원	27	1	1	1	1	1	1	-	2	6	4	3	1	2	2	1	-
현원	27	1	1	1 (환경)	1 (행정)	1 (행정)	-	1 (실무)	2	5	5	2	1 (농업)	2	2	1	1

※ 행정 8, 보건 7, 식품위생 5, 환경 4, 농업 1, 사회복지 2

□ 지명직무 - 8개 직무

- 사회복지, 환경, 식품, 공중위생, 청소년 보호, 의·약,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외무역법」에 규정된 원산지표시 관련 범죄

※ 지명직무 추진경과

- '08. 7. 7. : 3개 직무 ▷ 식품, 환경,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분야
- '09. 3. 30. : 3개 직무 ▷ 공중위생, 청소년, 의약분야
- '09. 11. 12. : 1개 직무 ▷ 대외무역법상 원산지표시 분야
- '20. 1. 1. : 1개 직무 ▷ 사회복지 분야

② 시 관련부서, 구·군 인력 및 지명직무('21.9월말 기준)

□ 총괄 : 513명(시 199, 구군 314)

- 시 본청 : 15개 분야 199명(소방 148명 포함)
- 자치구·군 : 15개 분야 314명

□ 기관·분야별 현황

(단위 : 명)

기관별 분야별	시									구·군																		
	계	소 계	특 별 사 법 경 찰 과	문 화 유 산 과	산 림 생 태 과	해 양 수 도 정 책 과	수 산 정 책 과	소 방 재 난 본 부	차 량 등 록 사 업 소	건 실 안 전 시 험 사 업 소	소 계	중 구	서 구	동 구	영 도 구	부 산 진 구	동 래 구	남 구	북 구	해 운 대 구	사 하 구	금 정 구	강 서 구	연 제 구	수 영 구	사 상 구	기 장 군	
계	513 (194)	199 (162)	27	1	3	2	12	148	3	3	314 (32)	22	11	12	14	39	7	22	13	19	36	11	33	15	18	27	15	
산림보호	42	3			3						39	1	1	2	0	3	2	6	2	5	5	2	3	2	3	0	2	
식품위생	54 (+21)	27	27								27 (+21)	3	2 (+1)	0 (+5)	4	5 (+1)	1 (+1)	0 (+3)	5	1	0 (+6)	0 (+4)				6	0	
의 약	12 (+27)	0 (+7)	0 (+7)								12	3						1		5	1				2			
계량검사	5	0									5	2						1								2		
문화재보호	14	1		1							13	3	1	1			1				3	1				2	1	
어업감독	33	12				12					21			3						3	2		6	3		4		
공중위생	21 (+36)	0 (+7)	0 (+7)								21 (+9)			5	3 (+1)	1 (+1)		2		0 (+1)	6	4			0 (+6)			
환 경	58 (+28)	0 (+7)	0 (+7)								58 (+)	2 (+1)	4	2	5	3	2	3	9	2	7	4	1	11	3			
도로시설 관리	10	3							3		7				6											1		
차량 무단 방지 등	61	3						3			58	3	2	3	3	7	3	6	2	5	5	3	3	3	5	2	3	
관광지도 (해수욕장)	7 (+1)	0									7 (+1)	2 (+1)			5													
청소년· 여성보호	26 (+7)	0 (+7)	0 (+7)								26	3	1	1	1	4	1		2	1	2	1	3	1	2	1	2	
원산지 표시 (2)	4 (+7)	0 (+7)	0 (+7)								4				1			3										
해양환경 관리	2	2			2						0																	
소방업무	148	148						148			0																	
대부업	1	0									1			1														
부동산 중개업	15	0									15			0			4	1	0			5	1	2	2	0		
사회복지	0 (+7)	0 (+7)	0 (+7)								0																	

※ ()는 식품과 공중위생 등 분야별 중복 지명 수치

□ 부산광역시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소방, 구군 포함)

지명분야	직무내용	직무관련 법률
사회복지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금 관련 등	• 사회복지사업법
환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강화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보전 위반행위 등)	• 대기환경보전법 등 39개 법률
식품	부정·불량식품 척결로 안전한 먹거리 확보 (식품 생산·유통·판매 등 유해여부, 위생관리 위반 등)	• 식품위생법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식품위생 범죄)
원산지 표시(2)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준수로 공정거래질서 확립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및 혼합 판매행위 등)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축산물위생관리법 • 인삼산업법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 양곡관리법 • 대외무역법 •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의약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유통질서 확립 (가짜 무등록 제품 제조 및 판매행위 등) 의료기관 불법행위 근절로 시민 건강 보호 (무면허자 의료행위, 의료기관 허위·과대 광고 행위 등)	• 약사법 • 의료기기법 • 화장품법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사 범죄)
공중위생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중위생업소 관리 강화 (공중위생업소 불법 영업행위 및 위생상태 등)	• 공중위생관리법 • 의료법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	유해환경 정화로 청소년 보호 강화 (청소년 유해매체물·약물, 유해업소 출입, 고용위반 등)	• 청소년 보호법
산림보호	산림, 임산물, 임목, 벌채 등 위반행위 수사	• 산지관리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 문화재보호법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어업감독	불법어업 지도·단속 등	• 수산업법 • 어업자원보호법 • 수산자원관리법 • 어선법 • 내수면어업법

지명분야	직무내용	직무관련 법률
도로관리	접도구역내 지형질변경, 공작물 설치 등 위반, 과적운행 단속	• 도로법
자동차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방치 단속 등	• 자동차관리법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관광지도	사업등록위반, 유원시설업 위반 등	• 관광진흥법
해양환경관리	해양환경정화 · 지도단속 등	• 해양환경관리법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습지보전법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어촌 · 어항법 • 항만법
소방	소방현장활동 업무방해, 소방시설 유지관리 위반, 소방시설 공사 도급위반, 무허가 위험물 저장 · 취급 등	• 소방기본법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방시설공사업법 • 위험물안전관리법 •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 119구조 · 구급에 관한 법률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계량검사	계량기제작업의 등록 등 위반	• 계량에 관한 법률
부 동 산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를 통한 주거안정 도모 (분양권 불법전매, 청약통장 불법거래 단속 등)	• 주택법 • 공인중개사법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대부업	대부업 · 방문판매 등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사업 육성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02

전담조직 설치근거 및 추진경과

02.전담조직 설치근거 및 추진경과

① 설치근거

- '54. 9. 23. : 형사소송법 제197조 ▶ 특별사법경찰관리
제196조 ▶ 사법경찰관리
- '56. 1. 12.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정

② 추진경과

- '04. 4. 26. :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 제정('04. 5. 1. 시행, '21. 1. 1.폐지)
- '08. 1. 4. : 「대검찰청 특별사법경찰 운영팀 운영규정」 제정('08. 1. 7. 시행)
- '08. 2. 22. : 특별사법경찰 운영협의회 개최 ▶ 전담조직 구성 요청(부산지검)
- '08. 6. 20. : 부산시 전담조직 설치 방침 결정 ▶ 시장
- '08. 7. 7. : 자치행정담당관실내 「특별사법경찰관리담당」 설치(5명)
- '09. 3. 30. : 「특별사법경찰지원팀(광역전담반)」 1팀장 3담당 ▶시장
- '09. 4. 13. : 법률자문검사 파견 ※ '10. 7. 1.자 명칭변경(舊 사법보좌관)
- '09. 7. 8. : 「특별사법경찰지원담당관실」 1담당관 3담당
- '10. 7. 6. : 「특별사법경찰지원과」 명칭변경
- '11. 7. 13. : 「특별사법경찰과」 명칭변경
- '21. 1. 1. :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정 및 시행
- '21. 8. 11. : 「부산광역시 특별사법경찰 인권보호수사지침」 발령 및 시행

